

第284回國會
(定期會)

行政安全委員會會議錄

第 10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9年11月20日(金)

場 所 行政安全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10년도 예산안(계속)
 -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나. 행정안전부 소관
 -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라. 경찰청 소관
 - 마. 소방방재청 소관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7. 前職大統領禮遇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38. 前職大統領禮遇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39. 前職大統領禮遇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40.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4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이장·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안
5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2. 군사시설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법안
5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8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8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8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8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8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8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8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9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9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9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9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戰鬥警察隊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
109. 戰鬥警察隊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
110. 연쇄살인 방지 및 치안력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審査된案件

- 의사일정 상정의 건 8
- 3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유정 의원 대표발의)(김유정 · 노영민 · 김태원 · 홍재형 · 김상희 · 김동철 · 양승조 · 최재성 · 김영우 · 송민순 · 강창일 · 신낙균 · 김영진 · 김재운 의원 발의) 8
- 3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 · 김우남 · 양승조 · 강창일 · 김상

회 · 홍희덕 · 김동철 · 김성태 · 김종률 · 이정희 · 이주영 의원 발의)	8
3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 · 김성태 · 원희목 · 유기준 · 유재중 · 이경재 · 이정현 · 이종혁 · 장제원 · 정병국 · 정양석 · 한선교 · 현기환 의원 발의)	9
3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 · 유기준 · 이한성 · 유성엽 · 안효대 · 신성범 · 양승조 · 주광덕 · 조윤선 · 박준선 · 최연희 · 황우여 · 정해걸 · 김성수 의원 발의)	9
3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 · 김우남 · 신학용 · 이석현 · 서갑원 · 백재현 · 김동철 · 홍영표 · 이성남 · 정옥임 · 박선숙 · 유원일 · 신건 의원 발의)	9
3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 · 최철국 · 강창일 · 양승조 · 장세환 · 노영민 · 박은수 · 문학진 · 김동철 · 강기정 의원 발의)	9
37. 前職大統領禮遇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최철국 · 문희상 · 박은수 · 노영민 · 전현희 · 주승용 · 우윤근 · 천정배 · 이용섭 · 양승조 · 김낙성 · 김재균 · 최재성 · 이춘석 · 백원우 · 강기갑 · 김종률 · 김성곤 의원 발의)	9
38. 前職大統領禮遇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 · 이미경 · 신학용 · 양승조 · 이용섭 · 백원우 · 최철국 · 전현희 · 우윤근 · 천정배 · 강창일 · 김영록 · 박선숙 · 최규성 · 박주선 · 강기정 · 홍영표 · 김동철 · 박영선 · 최문순 · 이춘석 · 유선호 의원 발의)	9
39. 前職大統領禮遇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 · 박은수 · 최철국 · 전현희 · 백원우 · 전해숙 · 홍영표 · 김동철 · 양승조 · 김효석 · 박지원 · 이윤석 · 서갑원 · 이춘석 · 박주선 · 강기정 · 최영희 · 송민순 · 신학용 · 박선숙 · 김종률 의원 발의)	9
40.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 · 강기정 · 강성종 · 김부겸 · 김성곤 · 김우남 · 김재윤 · 문국현 · 박영선 · 백원우 · 백재현 · 변재일 · 송민순 · 송영길 · 신낙균 · 양승조 · 이미경 · 이성남 · 장세환 · 전병현 · 전현희 · 전해숙 · 주승용 · 최철국 의원 발의)	9
4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박선영 · 구상찬 · 김충환 · 문학진 · 박진 · 박주선 · 이미경 · 정진석 · 진영 · 홍정욱 · 황진하 의원 발의)	9
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 · 배은희 · 이정선 · 강성천 · 김금래 · 이두아 · 정양석 · 이명수 · 김태원 · 유정현 · 권경석 · 장제원 의원 발의)	14
4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27
4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 · 이미경 · 김부겸 · 양승조 · 전해숙 · 최재성 · 백원우 · 송영길 · 김성곤 · 조영택 · 강성종 의원 발의)	27
4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 · 이인기 · 김정훈 · 최구식 · 현경병 · 안홍준 · 배은희 · 손범규 · 나성린 · 정진섭 의원 발의)	28
4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4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조영택 · 최영희 · 김동철 · 김희철 · 송영선 · 이한성 · 이성남 · 강석호 · 양정례 · 안상수 · 박종희 · 유성엽 · 강성종 · 이진삼 · 박선숙 · 박대해 · 이윤석 · 박상돈 · 최인기 · 박주선 · 김재윤 의원 발의)	28
4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4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종근 의원 대표발의)(박종근 · 이한성 · 홍사덕 · 임영호 · 유승민 · 배영식 · 유기준 · 오제세 · 서상기 · 조경태 · 주성영 · 한선교 · 손범규 · 이해봉 · 김재윤 · 안경률 · 김성식 · 박대해 · 이명규 · 정희수 · 강길부 · 조원진 · 김무성 · 이성현 · 고승덕 · 김소남 · 홍재형 · 정갑윤 · 이진복 의원 발의)	28
49. 이장 · 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박상돈 · 임영호 · 김성수 · 고승덕 · 김낙성 · 김용구 · 김창수 · 변웅진 · 류근찬 · 이상민 · 권선택 · 심대평 · 강석호 · 김재윤 · 이윤석 · 이회창 · 박선영 · 이재선 의원 발의)	28

5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황진하 · 김영우 · 김성수 · 권경석 · 박기춘 · 박준선 · 손범규 · 이한성 · 이명수 · 조진래 의원 발의) 28
5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황진하 · 김성희 · 강성종 · 차명진 · 유정복 · 이해봉 · 이한성 · 심대평 · 정병국 · 김태원 · 문희상 · 김성수 · 문학진 · 권경석 의원 발의) 28
52. 군사시설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법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이철우 · 배영식 · 김성조 · 이달곤 · 이인기 · 현기환 · 김종률 · 김성수 · 강석호 · 이명수 · 조문환 · 정해걸 · 황진하 · 신상진 · 박상돈 · 김태환 · 윤두환 · 김광립 · 이해봉 의원 발의) 28
5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 · 강석호 · 황우여 · 이인기 · 이화수 · 손범규 · 이해봉 · 김세연 · 김소남 · 현기환 · 조윤선 의원 발의) 34
5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55. 소방시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주성영 · 김성조 · 성윤환 · 유승민 · 박종근 · 이한성 · 이해봉 · 정두언 · 나경원 · 이성현 · 강석호 의원 발의) 34
56. 소방시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57.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임두성 · 김무성 · 서청원 · 김소남 · 진영 · 최옥철 · 이인기 · 김성수 · 강성천 · 손숙미 의원 발의) 34
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김성조 · 정영희 · 이화수 · 정병국 · 김우남 · 유성엽 · 이한성 · 손범규 · 김성수 · 윤영 · 황영철 · 강석호 · 김태환 · 김소남 · 박대해 의원 발의)47
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권선택 · 김낙성 · 김성곤 · 김창수 · 심대평 · 이명수 · 이상민 · 이정희 · 주승용 의원 발의) 47
6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임영호 · 김성수 · 고승덕 · 김낙성 · 김용구 · 김창수 · 류근찬 · 이상민 · 권선택 · 심대평 · 강석호 · 김재윤 · 이윤석 · 이회창 · 박선영 · 최인기 의원 발의) 47
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 · 이한성 · 임동규 · 정영희 · 안상수 · 정해걸 · 김세연 · 성윤환 · 이화수 · 이춘식 · 김영우 · 원희룡 · 박대해 의원 발의) 47
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 · 박순자 · 이춘식 · 조경태 · 원희룡 · 김을동 · 김세연 · 송광호 · 임해규 · 손숙미 · 차명진 · 이군현 · 신학용 · 이종혁 의원 발의) 47
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 · 정병국 · 강석호 · 원희목 · 박은수 · 이인기 · 정해걸 · 이한성 · 안홍준 · 김성태 의원 발의) 47
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 · 강기갑 · 권영길 · 박은수 · 양승조 · 유성엽 · 유원일 · 이한성 · 이정희 · 홍희덕 의원 발의) 47
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 · 나성린 · 정상선 · 양승조 · 송민순 · 이인기 · 우제창 · 안상수 · 김성곤 · 김효석 · 서종표 · 이낙연 · 이윤석 · 오제세 · 홍희덕 · 김종률 · 백재현 · 홍정욱 의원 발의) 48
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 · 주승용 · 강기정 · 김동철 · 최규성 · 송민순 · 양승조 · 문학진 · 최철국 · 박은수 의원 발의) 48
6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 · 송민순 · 양승조 · 김우남 · 김영진 · 이시중 · 안상수 · 유기준 · 김성수 · 강석호 · 김재윤 · 김소남 · 안효대 · 이인기 의원 발의) 48
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 · 이애주 · 조문환 · 안형환 · 권택기 · 안경률 · 김금래 · 정태근 · 이춘식 · 손숙미 · 공성진 · 김성희 · 원희목 · 주광덕 · 이정선 의원 발의) 48
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김정권 · 한선교 · 김태원 · 정해걸 · 이상민 · 김성순 · 이성현 · 손숙미 · 김효재 · 노철래 · 임태희 의원 발의) 48
7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 · 강창일 · 이윤석 · 강기정 · 김영록 ·

송민순·우제창·주승용·이춘석·최철국 의원 발의)	48
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례 의원 대표발의)(양정례·노철래·송민순·정해걸·임동규·정영희·김을동·서청원·김성곤·윤두환·백재현·박대해·정하균·유정복·홍정욱·김성태·안효대·신상진·강운태 의원 발의)	48
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강길부·강석호·강성천·고승덕·권영세·권영진·김광림·김성식·김옥이·김태원·나성린·남경필·박보환·박진·성윤환·신성범·원희목·윤석용·이성현·이정선·이한성·이화수·장제원·정미경·정진석·조원진·조전혁·진수희·차명진·홍일표·황영철 의원 발의)	48
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서청원·김노식·김성수·김을동·김학용·노철래·박종근·박종희·손범규·양정례·정영희·정하균 의원 발의)	48
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 의원 대표발의)(공성진·현경병·이해봉·원희목·이한성·김충환·강석호·김동성·김성희·진수희 의원 발의)	48
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정옥임·이한성·이윤석·이춘식·임영호·윤영·안규백·강운태·심대평·이애주·강명순·정미경·이정선·정진석·홍일표·박준선·조전혁·나성린·조해진·신영수·고승덕·조경태 의원 발의)	48
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신학용·최영희·강석호·오제세·황우여·김재윤·안홍준·이명수·배영식·이해봉 의원 발의)	48
7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시종·이범관·우윤근·노영민·이윤석·주광덕·홍일표·우제창·김성곤·김재균·강창일·김영진·김영록·최영희·김동철·박상돈·양승조·최철국·이춘석·김성태·정병국·김충환·허태열·강기정·김재윤 의원 발의)	48
7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신상진·이정선·김효재·김소남·백성운·박보환·박대해·김태환·서상기 의원 발의)	48
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이정현·이명규·정두언·신성범·김성조·정갑윤·김정권·조진래·유정현·김태원·신지호·김소남 의원 발의)	48
8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지호 의원 대표발의)(신지호·강성천·강석호·여상규·이범래·박보환·나성린·배은희·안효대·김동성·이은재·이두아·이한성·조전혁·안홍준·임동규·이성현·정옥임·차명진·신상진 의원 발의)	48
8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허태열·송영선·임두성·이성현·손범규·신성범·이시종·이해봉·한선교·김무성·조원진·김영선·최연희 의원 발의)	48
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장세환·유성엽·이한성·양정례·구본철·안상수·김소남·이진삼·박대해·박종희·강석호·정하균·황우여·이해봉·이경재·김우남 의원 발의)	49
8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발의)(송훈석·배영식·박민식·이화수·이계진·최육철·김우남·정해걸·김낙성·이사철 의원 발의)	49
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김정권·유성엽·이용섭·이진삼·안상수·이한성·조정식·박보환·김세연·구본철·김효재 의원 발의)	49
8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유성엽·김성태·김태원·김정권·이정선·이한성·김우남·안홍준·김무성 의원 발의)	49
8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조진래·유재중·홍장표·박순자·안상수·유승민·안효대·여상규·손범규·김정훈·백성운·정해걸·이성현·강석호·김성태·권택기 의원 발의)	49
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송영길·김상희·유성엽·조승수·김성곤·김종률·김재윤·박선숙·김동철·백재현·한선교 의원 발의)	49

8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 의원 대표발의)(유정현 · 신학용 · 원희목 · 조운선 · 정병국 · 신영수 · 한선교 · 강석호 · 유성엽 · 고승덕 · 신성범 · 홍정욱 · 안효대 · 심재철 · 노철래 · 나성린 · 김성태 · 이인기 · 권영진 · 김성희 · 조진형 · 박종근 · 신지호 의원 발의) 49
8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성운 의원 대표발의)(백성운 · 김정권 · 이춘식 · 나경원 · 장광근 · 이경제 · 박대해 · 허천 · 정희수 · 안상수 의원 발의) 49
9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임두성 · 박종근 · 이성현 · 여상규 · 손범규 · 이해봉 · 김무성 · 김성수 · 윤영 · 이경제 · 손숙미 · 윤석용 의원 발의) 49
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김정권 · 권경석 · 정두언 · 이한성 · 한선교 · 안정률 · 김희철 · 송민순 · 양정례 · 이성현 · 김재경 · 김호재 의원 발의) 49
9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유정복 · 홍정욱 · 이정선 · 이진삼 · 정하균 · 김희철 · 이한성 · 김성수 · 강석호 · 안상수 · 이성현 · 김학송 · 김태원 · 신학용 · 홍장표 · 최영희 · 최인기 · 장세환 · 김춘진 · 서청원 · 김선동 · 이명규 · 구본철 · 김정권 · 손범규 · 백성운 · 양정례 · 정양석 · 광정숙 · 김동성 · 유성엽 · 강승규 · 정태근 · 신상진 의원 발의) 49
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운선 의원 대표발의)(조운선 · 김태원 · 유기준 · 강석호 · 원희룡 · 이한성 · 정영희 · 유승민 · 이윤석 · 이성현 · 정하균 · 유성엽 · 이경제 · 이인기 · 박선숙 · 박선영 · 신상진 · 박종희 의원 발의) 49
9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 · 구본철 · 이한성 · 홍장표 · 유기준 · 유성엽 · 황영철 · 김정권 · 안상수 · 유정현 · 김소남 · 정양석 · 김충조 · 현기환 · 이명수 · 박종희 · 나경원 · 박대해 · 정하균 · 이진삼 · 신학용 · 이정선 · 양정례 · 황우여 · 송광호 · 이화수 · 이해봉 · 박상돈 · 정해걸 · 배은희 · 이혜훈 · 허원제 · 조정식 · 박보환 의원 발의) 49
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김성순 · 김종률 · 김희철 · 박대해 · 박선영 · 손범규 · 오제세 · 유성엽 · 이명수 · 주승용 의원 발의) 49
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 · 양승조 · 이한성 · 이상민 · 유성엽 · 신상진 · 황영철 · 김동성 · 변재일 · 김종률 · 김성수 의원 발의) 49
9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 의원 대표발의)(박대해 · 노철래 · 고승덕 · 김성조 · 김을동 · 홍사덕 · 김소남 · 양정례 · 유승민 · 이화수 · 김정훈 · 임영호 · 김성수 · 정영희 · 신상진 · 김호재 · 박준선 · 김재윤 · 유재중 · 남경필 · 황우여 · 송영길 · 조원진 · 정희수 · 이한성 · 이윤성 의원 발의) 49
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정선 · 현경병 · 양승조 · 배은희 · 김장수 · 이해주 · 유기준 · 윤상현 · 안상수 · 이정현 · 박기춘 · 이성현 · 강성천 · 신영수 · 진성호 · 유성엽 · 김성곤 · 정병국 · 진영 · 정미경 · 심재철 · 이두아 의원 발의) 49
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임두성 · 김무성 · 윤석용 · 이경제 · 정해걸 · 윤영 · 임동규 · 한선교 · 이성현 · 김옥이 의원 발의) 50
1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 · 조경태 · 이윤석 · 이성남 · 김성곤 · 김재균 · 강기갑 · 유원일 · 이용희 · 김낙성 의원 발의) 50
1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주성영 · 유승민 · 안상수 · 김성조 · 권영진 · 이두아 · 홍정욱 · 정의화 · 김옥이 · 조문환 · 이철우 · 정해걸 · 주호영 · 홍사덕 의원 발의) 50
1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 · 이한성 · 이해봉 · 정갑윤 · 안효대 · 안상수 · 강성천 · 황우여 · 임두성 · 손숙미 의원 발의) 50
1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 · 김영선 · 정미경 · 안효대 · 황영철 · 손범규 · 신지호 · 김성곤 · 신성범 · 김정훈 · 이명수 · 황우여 · 송영선 · 이한성 · 황진하 · 박대해 · 김성태 의원 발의) 50
1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 · 백재현 · 최인기 · 김충조 · 양승조 · 김영록 · 김영진 · 강기정 · 김우남 · 강창일 · 안규백 · 김진표 · 박선숙 · 박주선 · 정동영 의원 발의)

..... 50

1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 · 김정권 · 송영선 · 신학용 · 신영수 · 이성현 · 유성엽 · 홍일표 · 정병국 · 김성태 · 이명수 · 임영호 · 박민식 · 손범규 · 신성범 · 이시중 · 심대평 의원 발의) 50

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이상민 · 유성엽 · 이계진 · 김태원 · 이한성 · 박선영 · 김성태 · 우윤근 · 주성영 · 손범규 · 홍일표 · 노철래 · 박영선 · 박지원 의원 발의) 50

107.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김동철 · 김희철 · 김우남 · 오제세 · 이진삼 · 김재윤 · 우제창 · 박기춘 · 강기정 · 김충조 · 양승조 · 전해숙 · 안민석 의원 발의) 50

108. 戰鬥警察隊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안민석 · 김춘진 · 권영길 · 정영희 · 조전혁 · 권영진 · 박보환 · 김용구 · 임영호 · 권선택 의원 발의) 50

109. 戰鬥警察隊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안민석 · 김춘진 · 권영길 · 정영희 · 조전혁 · 권영진 · 박보환 · 김용구 · 임영호 · 권선택 · 이명수 의원 발의) 50

110. 연쇄살인 방지 및 치안력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차명진 의원 대표발의)(차명진 · 김성수 · 조전혁 · 박보환 · 김태원 · 이화수 · 황진하 · 이은재 · 김부겸 · 신지호 · 박준선 · 김영우 · 김동성 · 고흥길 · 김성희 · 이학재 · 홍장표 · 임해규 · 김영선 · 조정식 · 신학용 · 강승규 · 박종희 · 김학용 · 유정현 · 정미경 · 박순자 · 남경필 · 안상수 · 정진섭 의원 발의) 50

(10시36분 개의)

○委員長 趙鎭衡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상정의 건

○委員長 趙鎭衡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결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93조2제2항에 의하면 정기국회 기간 중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 예산안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이 아닌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일정으로 잡혀 있는 의안 중 제3항~제30항까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예산안처리에 부수하는 법안과는 거리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이것이 작년도에 접수된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들 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59조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이 경과되어야 상

정할 수 있고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및 25항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상정될 법안들과 관련된 법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심의하기 위하여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되어 있는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9항까지는 여야 간사간 이견으로 인해 상정을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유정 의원 대표발의)(김유정 · 노영민 · 김태원 · 홍재형 · 김상희 · 김동철 · 양승조 · 최재성 · 김영우 · 송민순 · 강창일 · 신낙균 · 김영진 · 김재윤 의원 발의)

3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 · 김우남 · 양승조 · 강창일 · 김상희 · 홍희덕 · 김동철 · 김성태 · 김종률 · 이정희 · 이주영 의원 발의)

3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재 의원 대표발의)(허원재·김성태·원희목·유기준·유재중·이경재·이정현·이종혁·장제원·정병국·정양석·한선교·현기환 의원 발의)
3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유기준·이한성·유성엽·안효대·신성범·양승조·주광덕·조윤선·박준선·최연희·황우여·정해결·김성수 의원 발의)
3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김우남·신학용·이석현·서갑원·백재현·김동철·홍영표·이성남·정옥임·박선숙·유원일·신건 의원 발의)
3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최철국·강창일·양승조·장세환·노영민·박은수·문학진·김동철·강기정 의원 발의)
37.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최철국·문희상·박은수·노영민·전현희·주승용·우윤근·천정배·이용섭·양승조·김낙성·김재균·최재성·이춘석·백원우·강기갑·김종률·김성곤 의원 발의)
38.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이미경·신학용·양승조·이용섭·백원우·최철국·전현희·우윤근·천정배·강창일·김영록·박선숙·최규성·박주선·강기정·홍영표·김동철·박영선·최문순·이춘석·유선호 의원 발의)
39.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박은수·최철국·전현희·백원우·전혜숙·홍영표·김동철·양승조·김효석·박지원·이윤석·서갑원·이춘석·박주선·강기정·최영희·송민순·신학용·박선숙·김종률 의원 발의)
40.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강기정·강성중·김부겸·김성곤·김우남·김재윤·문국현·박영선·백원우·백재현·변재일·송민순·송영길·신낙균·양승조·이미경·이성남·장세환·전병현·전현희·전혜숙·주승용·최철국 의원 발의)

4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박선영·구상찬·김충환·문학진·박진·박주선·이미경·정진석·진영·홍정옥·황진하 의원 발의)

(10시39분)

○**委員長 趙鎭衡**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에서 제41항까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1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宰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이은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李恩宰 委員** 본 위원이 30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이 왜 안 되는지 간단하게 좀……

○**委員長 趙鎭衡** 그것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고려해서 상정하고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검토보고서를 가지고 검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유정 의원, 김재윤 의원, 허원재 의원, 황영철 의원, 조경태 의원, 김재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김유정 의원안은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을 소속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도록 변경해서 법률에 규정하고,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없이 임의취업 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취업제한 실태를 보고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취업승인 사유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간 지적되었던 퇴직 공직자의 임의취업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1000만 원 이하로 규정한 과태료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김재윤 의원안은 공직자 등이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어서 대가를 받고 타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활동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퇴직 고위 관료의 자문·고문 형태로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업무 연관성의 범위나 대가·활동 등의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허원재 의원은 현행법상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공직유관단체가 상호 간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단체의 자회사도 포함하도록 하여 자회사의 임원들도 동법상 재산등록 의무자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관련 단체 임원의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법상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될 경우 자동적으로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의 규율을 받게 되어서 자회사의 자율성이 다소 저해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로의 포함기준인 출자비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황영철 의원은 현재 정치후원금은 해당 공직자의 순수한 개인 재산이 아님에도 등록대상 재산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서 공직자의 재산 내역이 실제보다 과장되게 공재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법상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대상 재산에서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후원금은 제외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치후원금의 엄격한 관리 측면 등을 볼 때 해당 정치인의 부정한 재산 증식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등록대상 재산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후원금 역시 공직자의 통장에서 관리되는 만큼 등록원칙에 충실해야 된다는 의견과 함께 동창회비·친목회비 등은 등록하도록 하면서 정치후원금만 등록에서 제외할 경우 형평성 논란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조정태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상임이사도 동법상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으로,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수행 과정에서 취득

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동법상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자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김재균 의원은 취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며, 취업대상자의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제한 위반 시에 업체에 대한 해임요구권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정안 중 취업의 정의나 일정액의 보수약정 등과 관련해서 다소 표현 방법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서 구체화하는 등 보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최철국 의원, 박지원 의원, 송영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철국 의원안과 박지원 의원안은 모두 전직대통령 서거 시 유족 중 배우자에 대해 비서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최철국 의원안은 배우자에게 비서관 1인을, 박지원 의원안은 비서관 1인과 운전기사 1인, 가사보조원 1인 등 3인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전직대통령 서거 후 배우자도 전직대통령과 관련된 추모행사나 각종 사회활동의 증가 예상에 따라서 품위 유지와 의전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송영길 의원안은 전직대통령 서거 시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될 경우에도 묘지관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 서거한 전직대통령으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고 윤보선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 등 두 분으로 묘지관리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안장장소에 따라 관리 및 비용부담의 주체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관리 효율성 제고와 국민 정서상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원 주체

및 근거와 관련해서는 국립묘지 이외에 안장된 전직대통령의 묘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동법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와, 전직대통령에 대한 지원 문제라는 점에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부처 간 입장을 확인한 후에 지원 주체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과 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수 의원안은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합해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되 공휴일인 국경일은 현행 3개를 유지하고 설날과 추석은 토요일인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주 화요일을 공휴일로 하려는 것이고,

박선영 의원안은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경일은 모두 공휴일로 하되 대체휴일제와 유사하게 국경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날을 공휴일로 하려는 것으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명절날 이동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와 국경일의 존엄성 확립, 교육적 효과 제고, 선양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의 3건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2건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회부되어 있어서 이와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31항부터 41항까지 제가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趙鎭衡**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위원 말씀하시지요.

○**강기정 위원** 장관님, 박지원 의원님의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퇴임 후 유고가 되시면 어떻게 배우

자나 유족이 예우를 받고 있습니까 현행?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일정 기간 동안 경호가 유지되다가……

○**강기정 위원** 2년 동안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일정 기간…… 취임일이 돌아오는 날을 마지막 날로 해 가지고,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취임일이 돌아오는 날부터 경호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예우보조금 지원하는 것하고 그 정도가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지난 번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제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질의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 대한 또는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지요, 배우자에 해서 일정한 비서관 또는 그에 준하는 보조인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던데 장관님도 생각이 같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때 저희들이 보니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이때까지 운전자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민주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본인에 대한 것하고 또 배우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부담을 상당히 높이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鎭衡** 또 토의하실 분……

이범래 위원 말씀하시지요.

○**이범래 위원**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에 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지금 위헌신청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위헌신청은 모르고,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나 가지고 재취업이 금지된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요 헌법소원이 들어온 것은 제가……

○**이범래 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당연히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많을 텐데, 지금 법안들을 보면 대부분 다 처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이범래 위원** 외국 사례랑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게 헌법상의 그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윤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근거가 과연 재임 시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더욱 더 충실 하나, 아니면 한 개인이 공직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를 침해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반론으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범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님 안을 보면 그냥 대가를 받고 타인을 위해서 활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걸 또 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제한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모든 공직자가 공직을 그만둔 경우를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업무의 연관성 문제라든지 그 업무와 관련해서 공직에 있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세세한 규정을 존중해야지, 일반적으로 법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은 배제한다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상당히 부당한……

○**이범래 위원** 형사 처벌하는 이런 사례가 외국에도 다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형사 처벌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범래 위원** 지금 이 안을 보면 그것을 위배했을 때 형사 처벌하는 안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외국 사례들이 이런 게 있냐 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약간 일반적입니다마는 미국하고 대만 싱가포르 캐나다 즉 파악한 바로는 처벌보다는 지역 제한 대상과 지역 제한 기간을 주로 규정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범래 위원** 그랬을 때 그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제재를 가하는 게 있어야지 실효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외국 사례들이 지금 이 안에 나온 것 같이 다 형사 처벌을 하게끔 되어 있냐 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여기 있네요.

만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벌어질 때 대만의 경우에는 제재규정에 2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과금도 있고요. 일본

에도 보니까 1년 이하의 징역과 벌과금, 벌금이 있네요. 그 외에는 우리도 지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를 합니다.

○**이범래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런데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 캐나다도 징역이나 벌금보다는 해직까지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다시 한 번 한다든지 그다음에 개별심사를 다시 한 번 한다든지 연금에, 연금 있지 않습니까? 연금 박탈과 연금액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제재수단을 쓰네요. 연금하고 연계된 나라가 제법 있습니다.

○**이범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다음은 정수성 위원 질의하시지요.

○**정수성 위원** 외국의 사례가 지금 연구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직 대통령 서거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지원 문제가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 좀 연구된 게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저희들이 올해에 전직 대통령께서 두 분이 서거하셨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지금 준비돼 가지고 있고, 관련법의 개정 문제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성 위원** 아니,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3인을 지원하자고 이렇게 바뀐 안이 나와 있는데 외국에는 지금 어느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걸 제가 조금 보고를 드릴까요?

○**정수성 위원** 예, 한번 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외국을 몇 개국을 주로 파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에까지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무원 신분의 비서관을 국가에서 지원해 놓은 경우는 드물고, 주로 영미 계통을…… 대통령이라는 게 미국뿐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다음에 인도하고 이런 나라를 본 모양인데 배우자에게 비서관을 지원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성 위원** 알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이인기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인기 위원** 장관님, 퇴직 후 취업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제한하는 데 헌법상의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이인기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예를 들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하던 직원이 재직

중에 공정거래 업무에 관련되어서 원고·피고, 신청인·피신청인 그런 어떤 관계의 사건을 취급하다가 본인이 퇴직 후에 원래는 신청인 입장이었는데 퇴직했으니 이제 피신청인이나 피고 입장이 되었겠지요. 그런 경우에 퇴직해서 어떤 로펌이나 회사에 취직해서 자기가 원래는 국가의 업무 당사자로서 일을 보다가 이제 어떤 원고나 신청인 일을 보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입장이 전환되어서 업무를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하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검찰의 경우에도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상대방을 피내사자 내지 피의자로 조사를 하다가 본인이 어느 날 퇴직해서 그 다음날은 피의자의, 피내사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한다, 그렇게 되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대해서 모든 걸, 특유의 어떤 내용을,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어떤 내용도 많이 있고, 공격과 방어가 바로 바뀌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이인기 위원 그런 것에는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은 역시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제한 문제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조심하고 자제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이인기 위원 특히 이 정도 되는 두 가지 경우라도 선언적이라도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업무 관련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보면, 구체적인 처분실적이 없더라도 감독과 책임의 범위에 포함된 업체와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의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또 재정정보조라든지 조세부과 등 처분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이 경미하면서 일회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재취업에 대해서 그동안의 관대화 경향에 대해서 쉼기를 박고 있습니다. 박고 있는데, 일반적인 법원칙으로서 어떻게 법 규정을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기 위원 거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의 관련성 이런 기준을 잡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원고·피고나, 신청인·피신청이나 그런 경우는 좀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숙제로 던져 놓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지금 완전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인기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나라 헌법상 예를 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6·25 참전유공자 이런 많은 분들이 자기 배우자가 사망해 버리면,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국가의 보훈 혜택을 오래 받는데 배우자가 돌아가서 버리면 보훈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타깝지요. 배우자가 좀 오래 살아야지 배우자가 받는 연금 혜택을 자기도 받는데 돌아가시면 끊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헌법상에 보훈의 영광은 본인에게만, 큰 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 배우자들께 당연히 이렇게 해 드려야 됩니까마는 헌법의 정신에도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 헌법의 큰 틀을 바꿔야 되지요. 이 분들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보훈의 혜택을 받는 분들도 남편이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바꿔 줘야 되지, 이 분들만 바꾸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저는 어긋난다, 외국의 예에도 이런 예는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정갑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鄭甲潤 委員 공직자 재취업 기준 강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지난 번 국정감사 또 지난해 국정감사 2년 연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또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라든가 또 국방부 이런 쪽에서 퇴직해서 바로 산하 관련 기업에 취직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경쟁 업체들에게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또, 오히려 기술 개발보다는 그런 사람 스카우트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퇴직하기 전에 소위 직무 탈색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누누이 봐 왔습니다. 또 그동안에 지적도 되어 왔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근절이 되어야 되겠다, 아까 조금 전에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8월 29일인가 그쯤 되는데 아마 그러한 부분이 지금 종래의 어떤 개념보다는 상당히 강화된 그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어떤 부처에 따라서 또 관련 산하 기업이 많은, 지금 현재 대표적인 케이스로 정부 부처 중에 경제 분야의 산하 기관들의 연봉이 행안부 쪽 산하 기관들 연봉하고 비교 한번 해 보세요. 비교 안 됩니다. 정말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런 것은 다 같은 소위 정부 조직 아래 산하 기관인데 연봉을 따지고 보면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이고 이것은 또 북한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그런 것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부처나 똑같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위원님, 이것은 직역에 따른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국가 내에 있는 인재의 활용이라는 측면도 좀 봐 주시고, 다만 업무 연관성이 관련성이 높아서 역으로 평소에 공직에 있을 때 공정하고 타당한 결정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균형을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鄭甲潤 委員**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말 노하우를 그냥 썩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오히려 더 장려하고 받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막상 현장에 가면 어떤 이권하고 실제 기업의 경쟁력하고 좌우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기업이 기술 개발이나 어떤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사람 스카우트하는 그런 쪽에 혈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정말 그렇게 운영함으로써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줄 때 다 상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형 위원!

○**홍재형 위원** 공직자 재취업 문제는 공직자들한테는 조금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미국을 보면 취업 제한을 좀 풀고 그 대신 그 사람들이 재직 기간 동안에 알고 있는 비밀을 활용해 가지고 국가에 손해를 나게 했다든지 시장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되었다든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벌을 가하는 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법안소위 할 때 그런 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장관이 인재 활용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위법을 했을 때만 더 규제를 강화하는 별책이 많이 강화되는 그런 나라 또 원천적으로 막는 나라를 비교해 가지고 법안소위에서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끔 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미국의 경우는 고의로 자기 직무를 활용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상당히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안소위에서 토론될 수 있는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고, 이들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배은희·이정선·강성천·김금래·이두아·정양석·이명수·김태원·유정현·권경석·장제원 의원 발의)

(11시10분)

○**委員長 趙鎭衡**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해서 종합적인 가족 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 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해서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08년 2월 단행된 여성 및 가족 기능 관련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발생한 적극적인 여성 정책 수립의 한계 또 가족 정책의 종합성, 효율성, 전문성 저하라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여성부는 부로서의 위상 강화와 함께 가족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 종합성을 보다 제고할 수가 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복지 등 현안 사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육·아동 기능의 추가 이양 필요성에 대해서 찬반 입장이 각각 개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 수행 체계의 효율성과 해당 기능과 관계된 주요 이해관계자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한 후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趙鎭衡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식 위원 말씀하시지요.

○최규식 위원 장관님, 이것이 통상 정부조직법을 바꾸는 경우에 정부 조직 개편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책임지고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의원께서 발의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저는 그 부분은 아마 이른재 의원님께서 여성문제에 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여성 의원님들께서 지금 여성부의 기능과 관련해서 아마 정부에 대해서 요구도 있었고, 또 정부로서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른재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규식 위원 이른재 의원께서 발의한 이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정부 입장은…… 정부의 입장이라 함은 전체의 입장일 텐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가족 기능하고 그다음에 보육 기능을 가지고 정부 안의 여러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최규식 위원 직접 답변하시기가 그러면 누가 좀……

실무가 누구 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조직실장이……

최근에 저희들 인사가 있었습니다. 아까 소개해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서 저번 조직실장이 기획조정실장이 되었고, 조직실장은 지금 지방에서 올라온 지가 이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이 그 문제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최규식 위원 예.

제가 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좀 이해가 쉽도록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정부 출범하면서 정부 조직을 개편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렇습니다.

○최규식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에는 여성부를 폐지하자고 했다가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여성부가 그야말로 살아남기는 살아남았는데, 그 당시에 정부 출범 직전에, 17대 국회 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최규식 위원 저도 그 당시 행자위원회의 법안 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여성부를 이왕 살릴 것이면 그러면 그 기능을 제대로 주어야지 그냥 명목상으로만 이렇게 여성부를 존치시키고 기능은 다 보건복지가족부로 가져가면 이게 무슨 살리는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1년 반 지나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지적한 그대로 다시 여성부에다가 갖다 보내는,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이게 그래서 정부……

제가 아까 왜 정부가 안 내고 의원께서 냈느냐고 했는데 그 질의의 사실 배경은 정부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려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정부 내에서 이 개정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실장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위원** 아니, 아까 잘 모르신다고 하길래……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러면 실장이 바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위원** 그냥 자기 판단을 말하지 마시고요, 정부 내에서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장관께서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박찬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조직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 논의의 진행 상황을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성계와 또 국회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여성부가 수행하는 기능이 일개 부처로서는 기능이 다소 미약하다는 그런 인식이 다소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관계 부처 간에 논의를 해서 이른재 의원이 제기하신 안이 일리가 있다,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최규식 위원** 그래요? 정부 내에서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간에도 다 이견 없이 이제는 통일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박찬우** 제기……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아직까지 의원님이 낸 것을 가지고 정부 내에 합의를 위한 회의를 했거나 결정을 한 사안은 없습니다.

○**최규식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한 것은 어떻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박찬우** 실무 수준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실무 수준에서 왔다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규식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한 내용으로 봐도 꼭 과거를 들추자는 것이 아니고, 장관님도 생각하시기에 그당시에 결국은 잘못된 결정 아니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위원님이……

○**최규식 위원** 한 부가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조그만 직무 내용이고 한다는 것을 이제 와 가지고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다시 원상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이 내용이 원상인지

여부는 조금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가족 문제를 여성과 같이 결부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 생각하고 그런 면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규식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또 이왕 가족을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해서 여성부로 보낼 경우면 보육이나 아동 같은 것도 가족이라는 개념 속에서 전부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데……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최규식 위원** 또 그중에서도 가족만 딱 떼어가지고 청소년하고 해서 여성으로 보내고 복지하고 아동은 그대로 또 보건복지부에 남겨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저도 이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 이야기를 조직실장으로부터 몇 차례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아동이나 보육 문제까지 다 넣어서 가족 문제를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보육을 넣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 문제가 또 있고, 아동도 시설 문제가 지방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복지 기능하고 연결되는 것이 좋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최규식 위원**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정부 측에서 만일에 얘기를 한다면 보육이나 아동 기능이라는 것이 가족과 연계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사회복지정책적인 기능이 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있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답변을 한다면 제가 또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정부부처에 뒀다 뺐다 하면서 그냥 이만큼은 가져가고 이만큼은 남겨 놓고 무슨 바터하는듯이 이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범 때부터? 그것을 제가 지적……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현재 이른재 의원님의 안을 제가 보면 제 생각은 저출산 문제는 상당히 넓은 장기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있는 이상 아동과 보육 기능은 거기에 있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최규식 위원** 예, 그다음에 말이지요 보건복지부에서 가져가는 청소년하고 가족 중에서 보육·아동이 가족에서 빠지다 보니까 가족 기능보다는 청소년 기능이 더 큼니다. 그런데 명칭은 또 여성청소년부가 아니고 여성가족부이고 청소년은

또 어디로 없어져 버렸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청소년 정책은 보니까 옛날에는 위원회로 있다가 또 여성가족부 안에 있다가 또 보건복지부로 여러 번 움직였는데 정책 부분은 중앙정부가 많이 관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에서 많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아무래도 가족이라는 비중이 조금 더 부각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규식 위원** 지금 정부가 기능을 뗐다 붙였다 하는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산술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당연히 명칭도 여성청소년가족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능의 정도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물론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또 다시 다룰 것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감사합니다.

○**최규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기 위원 말씀하시지요.

○**최인기 위원** 최인기입니다.

2001년도 여성부 신설할 때 제가 행정자치부장관인 것을 아십니까, 이달곤 장관께서?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기 위원** 여러분이 역사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청소년 업무를 여성부에 쥐서 여성청소년부로 하는 것이 맞다 제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여성계에서 순수한 여성 기능만 쥐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해서 제가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몇 차례 보고하고 여성부로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새 정부 출범할 때 정부조직 개편할 때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로 최종적으로 협상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부만 가지고는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업무가. 그래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낸 것 같은데 최규식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정부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니 결정하고 또 조직의 안정성이 있어야지요. 이것이 1년 있다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 우선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가족 기능을,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

적으로 여성가족부에 가족이 가더라도 그 기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것이 노인의 문제, 아동의 문제, 청소년 문제, 주부, 남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복지정책·지원정책은 전부 복지부가 하고 있는 것이고, 가족에 대한 것은 정책밖에 없어요. 집행 업무가 별로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렇습니다.

○**최인기 위원** 그렇다고 보면 청소년 업무는 청소년육성 정책을 비롯해서 일선에 청소년 지도·계도·단속·교육·훈련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일선 기관하고 연계되는 시스템을 보면 음으로 양으로 봐서 여성청소년부가 훨씬 기능에 적합하다, 지금 청소년 기능은 사실상 경찰에서도 청소년계 여성이 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도 청소년 담당자가 다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 학교는 물론 학교교육을 통한 것이지만 학생들이, 청소년의 입장에서 육성·보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아십니까? 챔버리니 이런 것에 대한 훈련, 이런 것이 청소년 업무예요. 그리고 이것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네트워크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부로 하면 업무량이 훨씬 활성화되고 기능에 대한 대표 기능이 될 것이다, 명칭에 대한 지적을 제가 합니다. 그것은 최규식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보육·아동 기능하고 가족 기능 문제인데 정부 내에서 그런 찬반이 정부한테 있는 것도 알고 이것이 결국은 정부의 그런 필요성이 여당 의원에게 전달되어서 법안이 이렇게 나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정부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 버려도 돼요. 여러분이 솔직하지 못하게 그럴 필요는 없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 서비스의 객체에 중점을 둘 것이냐, 행정 본래의 기능에 중점을 둘 것이냐, 이 두 가지 분류를 여러분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동이라고 하는 행정 서비스의 객체를 중심으로 본다면 아동 업무를 다 끌어다가 여성가족부 안에 주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복지 지원·보호·육성이라는 것이 아동만 따로 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수급 보장, 장애인, 노인, 이런 지원 업무는 전부 보건복지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로 볼 때는 기능 분류는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동에 대한 것만 보호·육성·지원 기능을 따로 떼어서 여성부로 준다면 복지 정책 전체 속의 체계를 떼어다 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을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기능별로 보면 그렇게 분리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객체로 보면 하나이지만 지원 기능으로 보면.

그래서 명칭도 여성청소년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더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육·아동 문제와 가족 문제 기능으로 볼 것이냐 객체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는 기능별로 일원화해 주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鎮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석 위원 말씀하시지요.

○권경석 위원 이번 여성가족부로 만드는 데 대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 기능의 효율화, 전문성 체계화 등등을 통해서 정부 기능을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 또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스럽고 도움이 될 것이냐, 공급자 수요 측면에서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 몇 가지 행안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 아동 문제는 흔히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자라는 아동은 가족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겠다고 보지만 그러나 결식아동, 고아, 시설수용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보살펴야 할 대상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 쟁점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것은 존경하는 최인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정상적으로 자라는 아동에 대한 지도라든지 정책은 가족 안에 포함되고 실질적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한 문제, 그다음에 가족적인 지원이 부족한 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거의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강조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가족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

할은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권경석 위원 정상적인 가족의 운영에 대해서 가족이 살아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주거나 재정적 지원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역할 범위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재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너무나 현대사회가 다핵화되고 있으니까 가족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그 울타리 안에서 청소년 문제를 보자는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대상 그룹을 명확히 하는 장점은 있지만 가정이라는 단위, 아주 중요한 단위를 잃어버리니까, 명칭에서 잃어버린다고보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마 가족 안에는 청소년을 담기가 좀 용이한데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쓰면 가족의 중요성을 조금 강조해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이 좀 덜 부각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래서 지금 가족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부터 죽 역사적으로 보면 전통적으로 관장을 해 왔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권경석 위원 중간에 잠깐 보건복지가족부로 넘어갔다가 여성부 쪽으로 다시 환원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 그 경위를 보면?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권경석 위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설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관장 범위, 말하자면 전달 체계, 업무 추진 체계로 볼 때 지방과 또 시설과의 연계성은 여성부로 가는 것이 낫습니까, 보건복지부에 있는 것이 낫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시설은 당연히 복지부에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시설주들이 기능만 따로 떼 가지고 여성부로 가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복지 차원에서 전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말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권경석 위원 그러나 시도나 시·군·구의 조

직 기구 내용을 보면 업무 관장 체계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지금은 복지부 쪽으로 해 가지고 체계가 많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중앙정부 조직과 시도 간의 조직 체계를 보면 업무의 연계성이 복지 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권경석 위원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 쪽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견해다 이 말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권경석 위원 보육 문제는 영·유아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영·유아 보육 지원 문제지요.

○권경석 위원 영·유아가 보육의 대상인데 이 부분은 저출산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업무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건복지부가 낫습니까, 여성부가 낫습니까? 저출산 문제 심각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 부분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보육과 관련해서 앞으로 보육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인구정책하고 결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인구정책하고 궤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또 보육시설이라든지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도 보건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 가족 정책 전체로서 연결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경석 위원 일반적으로 가족 안에 죽 계급을 따져 보면 가장이 있고 밑에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이가 어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이렇게 죽 연령대별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권경석 위원 그런데 가족은 여성부가족부로 가고, 가족 전체에 대한 정책 추진은 여성가족부로 가 버리고, 나머지 아동 이하 영·유아까지는 보건복지부에 남고, 청소년 분야는 또 때 내 가지고 여성가족부로 간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연령대별로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 업무추진 과정이나 경위로 볼 때 청소년은 주로, 청소년위원회가 전에 담당할 적이 있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2005·2006년 그때는 총리실에 청소년위원회가……

○권경석 위원 따로 독립돼 있었고……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권경석 위원 그다음에는 또 어디로 갔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청소년위원회가 폐지되고는 복지부로 왔습니다.

○권경석 위원 복지부로 갔다가, 과거에 여성부에서는 담당을 안 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옛날에 문광부에 일부 있다가 청소년위원회로 갔다가 보건복지부로 갔다가 했는데……

○권경석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것은 지금 보니까 새 정부 출범해서 1년 반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담당할 기간은 한시적이었다, 한 1~2년밖에 안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권경석 위원 나머지는 독립적으로 운용돼 온 그런 과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권경석 위원 청소년은 독립적으로 운용돼 온 기간이 많았고 보건복지부에 간 적이 딱 1~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기간이다…… 이번의 정부조직법 출범하고 그렇게 됐네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러면 성질로 볼 때 청소년 업무는 물론 가족 범위 내에 포함은 되지만 과거에는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용돼 온 업무체계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문제는 보건복지부 복지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고 가족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입장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가족정책 안에는 여성이 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을 정립하고 그것이 사회활동 하는데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취약 가족이 많지 않습니까? 홀어머니의 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더욱더 가족제도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가족의 범위 안에 청소년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여성가족부를 주장하는 쪽에서 보고 있는 하나의 업무의 연관성이 되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종합하면 지금 행안부의 입장은 이런 것 같네요. 보건복지부의 기능은 복지·의료·보건 분야가 전문 업무 기능이다, 그래서 고유 기능이나 전문성 이것을 감안하고 또 업무의 전달체계, 시도의 기구 또 시설과 같은 지방기관과의 연계성을 감안하더라도 아동, 보육, 영·유아 보육 등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에 남겨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트레이더(trader) 입장에서도 바라고 있다 이 말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도하고 시설장들하고의 연결고리를 볼 때도 거기에 변화를 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심각한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정부로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권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다음은 홍재형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홍재형 위원 장관께서 보육원 시설이 있어서 어렵다고 그랬는데, 2년 전에는요 보육이 여성부에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형 위원 예?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여성부에서 했었습니다.

○홍재형 위원 갔다가 다시 왔는데 뭐 또 다시 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부처로 하면 효율적이다 그래 가지고 바꿨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홍재형 위원 그것을 그때 행안위에서 했겠지만 박재완 수석이 주동적으로 했는데 인수위 만들어서 20일 동안 했어요, 법 만드는 것 이것을. 그래서 2년도 안 돼 가지고 다시 또 바꾸는 것인데, 그러면 정부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정부가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때 법

만든 것 잘못했다. 그때 잘못 만들어서 이번에 다시 고쳐야겠다.' 그리고 이것은 꿈수로 의원을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정당당하게 국내에서 관계부처협의회 해서 국무회의 거쳐서 내야 됩니다. 정부조직법을 왜 국회의원을 통해서 내요?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지금……

조직실장, 전 조직실장 나와 보세요.

인수위원회 할 때 행자부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박찬우 그 당시 조직실은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홍재형 위원 예?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박찬우 실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홍재형 위원 자료 제출하고 얘기를 했어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박찬우 예.

○홍재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 정부가 또 생기면 새 정부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전 정부가 한 것 좀 다 지우겠다 그러면 또 조직개편 할 텐데 지금 이 정부가 시작을 해서 조직개편 한 실적·효과·결과가 더 능률적이었나, 국민에게 서비스를 더 잘 제공했나 연구한 것 있어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박찬우 조직개편을 하고 일단 통합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융합 관리를 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홍재형 위원 지금 MB정부에서 인수위원회에서 20일 동안 해 가지고 국회에서 1개월도 안 돼 가지고 통과시켜 가지고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정통부를 없애서 하기도 하고 여성가족부를 가족을 없애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당초 하고 싶었던 대로 효과를 내고 있느냐 내고 있지 못하느냐 하는 결과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지금 현재 정부 전체의 계획의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보고서를 마련한 적은 없습니다.

○홍재형 위원 행안부에서 뭐 해요, 그런 것도 안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저희들은 그러니까요……

○홍재형 위원 아니 조직개편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국회의원보고 내라고 그러고, 전체 정부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이 정부는 세종시 얘기할 때 만날 효율, 효율 하는데 효율성이 있느냐, 국민한테 대국민 서비스를 제대로 하

고 있느냐 그것을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성부에 대해서 이것은 더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야지 여성부가 작으니까 조금 더 주겠다, 그중에서 쉬운 것 몇 개 더 주겠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홍재형 위원**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지금 현재 정부는 구조적인 개편 이후에 그 구조적인 개편을 가지고 효율화를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홍재형 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미시적으로……

○**홍재형 위원** 장관은 노력하는데 실지로 결과가 효율이 올랐느냐, 대국민 서비스가 늘었느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평가를 해 봐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것……

○**홍재형 위원** 정치인은 다 됐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공무를 해 온 공직자는 백년 대계 생각해서 이것이 진짜 잘된 것이냐, 바꾼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이냐 생각을 하다가 내야지 그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하나 툭 던져 내 가지고, 이것이 행안부가 할 일입니까? 조직실이 몇 명이에요, 사람이?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박찬우** 한 130명 정도 됩니다.

○**홍재형 위원** 130명이 뭐 해요, 그런 것도 안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부가 내걸었던 법안화 문제라든지 지방이양 촉진 문제라든지 이것을 조직실에서 즉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이번에 내놓은 여성가족부는 정부 안에서도 오랫동안 검토를 해 오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른재 의원님을 통해서 오늘 법안으로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형 위원** 정부안이면 정부가 ‘지난번 직제 개편이 졸속으로 돼서 죄송하다’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사과하시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이 문제는 지금 의원

님이 발의를 해 놓았는데, 물론 정부하고 여러 차례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세요. 이것이 의원안인지 정부안인지 분명히 하시고 정부안이면 분명하게 사과를 하고 시작을 하라 그런 얘기에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이른재 의원님 지금 안 계셔서 정부안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의 차이라든지 이것을 제가 확인해 볼 수 없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재형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요 여성부가 어떻게 됐냐 하면, 이것 또 대선 얘기까지 나오면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조금 화가 나시겠지만, 2007년 11월 30일에 YWCA 강당에서 열린 여성정책 토론회에서 중앙행정조직에 대한 대부·대처·대국 개편 공약 관련해 가지고 ‘여성가족부는 뚜렷한 자기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행정기관에 흠어져 있는 관련 기능을 모아서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명박 후보께서. 그렇게 하시고 인수위원회에서 할 때는 여성부를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직실장, 내 얘기가 맞아요? 내 얘기가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박찬우** 당시의 그 논의 과정에는 제가 조직실장으로 있지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재형 위원** 있던 사람 있어요, 지금?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세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박찬우** 그동안 인사가 있어서요 지금 이 자리에는 당시의 실무자는 없습니다.

○**홍재형 위원** 없다가 할 수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후보 시절에는 여성가족부를 다른 부처에 있는 기능을 다 모아서 존치시키겠다 그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 여성부를 없앴어요. 그때 지금의 야당들이 여성부는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성부를, 지금 100명 명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1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형 위원** 100여 명 되는 여성부로 만들고, 지금 보건복지부 몇 명이지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815명……

○**홍재형 위원** 여성부가 3600명이 넘습니다. 물론 아동복지 하는 쪽, 가족·아동복지·청소년 하는 데는 합해서 한 160명인데 3600명 하는 데에다가 다 떼어 뺐어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또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정부 내에서 제대로 좀 검토를 하시고 이것을 내시던지…… 또 하나는 이렇게 꿈수, 총리는 꿈수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꿈수라는 얘기를 들어도 마땅하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또 하나는 제가 보건복지부의 조직을 봤어요. 160명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어떻게, 나뉘져 있습니까 합해져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지금 복지부 조직에 보면 아동·청소년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실에서, 국 단위까지는. 그러나 과 단위에 내려가면 분류가 되겠습니다.

○**홍재형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정기국회 중점 입법과제로 아동·청소년 통합 3법을 선정했어요. 한쪽에서는 통합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청소년만 떼어다가 한다고 하고, 여성부 옮기면서 예산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만일 이것이 이루어지면……

○**홍재형 위원** 아니, 전에 여성부 만들면서 또 이사하고 그랬어요. 그거 예산 많지도 않아요. 한 1억 4000인가밖에 안 들었지만 예산 더 들여 또 사람들 재배치해, 그래 가지고는 1년 반 지나서 또 다시 또 옮기고……

지금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십니까?

실장, 지금 실 밑에 국이 몇 개 있어야 돼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박찬우** 보통 2개에서 3개 이상 있습니다.

○**홍재형 위원** 4개 이하면 실 잘 안 만들어 주지요,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박찬우** 보통 3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상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2개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재형 위원** 지금 4개 국인데, 아동청소년정책가족실이 빠져 나오면 두 국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아동·청소년·보육…… 보육은 옛날에 여성부가 하던 거예요. 보육, 다 이리 와야지 왜 국에서 나뉘 가지고…… 보육단체에서 뭐

라고 그러면 ‘그것은 가족부에서 해야 된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육단체가 옛날에 보건복지부에 있다가 여성부로 가니까, 3600명 중의 한 부서니까 보육 관계 별 신경 안 써요, 보건복지부는. 그렇게 가다가 여성부로 오니까 이게 골치 아프게 하나하나 점점을 하니까 옛날 보건복지부 때가 낫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장관이 자꾸 보육은 그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압력을 받아 가지고 지금 보육을 다시…… 옛날에 여성부에 보육이 있던 것을 그리로 갔다가 이번에 확충한다고 하면서 다시 안 가져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려면 지난번 잘못된 것 사과하시고 정부안으로, 정부 내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차관회의 거치고 국무회의 거쳐 가지고 그리고 제출을 하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정부 직제 전부 국회의원이 내서 할 것입니까? 그러면 정부는 이제 입법 제출권도 포기하실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위원님……

○**홍재형 위원** 그리고 하시려면 가족·청소년만 할 게 아니고 아동·보육도 같이 보내는 안으로 만드세요. 그 문제 가지고, 제가 법안소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오세요, 법안소위에.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위원님 지적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부도 정부 초기에 들어설 때 만들었던 부처라든지 조직들을 계속적으로 죽 관리·개선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홍재형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으면 다른 것까지 합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다른 것은 아직까지 법으로 할 만한 내용은 없고……

○**委員長 趙鎭衡** 장관께서는 준비하셨다가 천상소위에서 다룰 거니까 소위 때 자료를 잘 내시고 또 설득시키거나 좀 미리 설명드릴 일이 있으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미리 설명을 주셔서 소위 할 적에 쉽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

○**委員長 趙鎭衡** 다음, 김유정 위원 말씀하시지요.

○**김유정 위원** 지금 2년도 채 안 돼 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여성부·복지부 기능이관 문제, 업무이관 문제 가지고 다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유감입니다. 당초에 기능이관에 신중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렵게 가져온 여성부 보육 업무 다시 보내고 청소년 업무 다시 또 보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 또 아동·청소년 분리하고 보육·가족 분리하고 도대체 정부조직 개편이나 기능 개편의 철학과 원칙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과 철학도 없이 그냥 나누고 쪼개고 또 합하고 보내고 이렇게 이렇게 기형적이고 즉흥적인 기능 개편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다시 추진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장관님께 드리고 싶고요.

상황이 어려우면 솔직하게 정공법으로 나가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정부 제출 내용을 가지고 자꾸만 아니다라고 부인하시는 것, 그것 저는 답변이 계속 옹색하게 느껴집니다.

대통령께서도 11월 3일 날 직접 청소년하고 가족 업무 여성부로 이관한다고 발언도 하셨거든요. 또 정부에서 계속해서 와서 내용 설명하고 있고요. 자꾸만 아니라고 하시면 정부의 잘못된 것 감추고 사회적 갈등의 논란의 불씨를 자꾸만 국회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이신 것 같아서 좀 옳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 안에 보면,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요, 여전히. 그리고 이번 기능개편안은 여성부를 부처다운 형태로 갖춰 주기 위한, 그래서 부처 간의 이기주의로 나눠먹는 형태로밖에 안 보입니다. 특히 예산 규모가 적은 두 개 기능만 여성부로 보내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족·보육·아동·청소년은 기능적으로 볼 때 업무적으로 볼 때 정말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떼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능은 통합해서 추진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보내려면 한꺼번에 묶어서 다 여성부로 보내든지 아니면 복지부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연관성이나 또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처 간 협의로 결정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부기관 조직진단도 행안부에서 하시고 또 18개 부처 조직관리 정원관리 다 하시잖아요. 그런 것 철저히 하게 하셔야 가지고, 지금 각각의 이해당사자들 입장이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정부입법 제출 형태로 다시 추진하시는 것이 저는 또 다른 졸속을 막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다음, 권경석 위원 말씀하시지요.

○**권경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책임론, 국회책임론 이 두 가지가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우리 행안위원회가 미리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언제 발의돼서 언제 국회 통과됐습니까? 아는 사람 없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지난번 것 말입니까?

○**권경석 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 우리 부처 통합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것은 2008년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회에 내 가지고 국회 논의를 거쳐서……

○**권경석 위원** 내가 확인할게요. 이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날이 2008년 1월 25일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날이 2월 20일입니다. 이때 발의된 법안은 참여정부에서 발의해서 제출한 법안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제출해서 17대 국회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당초에 발의된 내용을 보면, 부처가 통폐합이 되어 13개 부처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외교통일부를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로 분리해서 하나 신설하고, 보건복지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로 나누어서 여성부가 신설된 것입니다. 13개 부가 15개 부로 신설된 것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의결

한 것입니다. 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야 분명히 참여정부 발의, 인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바로 부처 2개를 신설하는 수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국회책임론을 제기해야 됩니다. 17대 국회 책임론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보건복지가족부를 만들고 여성 소관은 여성부를 신설하면서 빼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적절한 업무 배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100명밖에 안 되는 여성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위를 분명히 알고 그 사실관계를 알고 심의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委員長 趙鎭衡 잠깐요.

○홍재형 위원 정부에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권경석 위원님이 얘기한 것 답변해 보세요.

○이인기 위원 순서대로 합시다.

○委員長 趙鎭衡 발언권을 강기정 위원께 드리겠습니다.

○홍재형 위원 그 법안이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거예요. 참여정부가 발의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는 사인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새 정부 출범한 다음에 새 대통령이 사인한 거예요. 행자부에서 그것도 모르고……

○委員長 趙鎭衡 홍재형 위원님, 강기정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논리를 말씀할 테니까 들으시지요.

○강기정 위원 이명박 정부, 현 정부 취임 날이 며칠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2월 25일입니다.

○강기정 위원 작년 2월 25일이지요? 작년 2월 25일 전 1월 25일 날 법안 발의되어 있는데, 이것이 참여정부에서 발의된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여정부의 의도가 담긴 법이다 이렇게……

○권경석 위원 그것은 아니고, 내가 수정할게요. 참여정부 때 넘어왔다고 그랬지……

○김유정 위원 참여정부 책임이라고 방금 말씀 하셨잖아요.

○최규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기정 위원 발언 들으세요. 그렇게 왜곡을 하시면 되겠어요?

○김유정 위원 팩트를 왜곡하시면 안 되지요.

○권경석 위원 17대 국회에서,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한 것은 맞아요.

○강기정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홍재형 위원 그게 참여정부가 낸 게 아니고 안상수 의원이 낸 거예요.

○권경석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강기정 위원 그때 저도 그 정부조직법 논의하는 데 참여했는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장관 각료들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당시에 인수위 요구에 의해서, 형식적으로는 2월 25일 취임 전이지만……

○李恩宰 委員 아니, 개인 의견을 왜 못 내요……

○委員長 趙鎭衡 이은재 위원 가만히 있어요. 발언권 드린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얘기들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강기정 위원 아무튼 형식적으로는 2월 25일인데 인수위의 요구로 당시에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제출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요?

장관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권경석 위원님 말씀이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수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제가 그때 사실 인수 위원에는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이 절차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왔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오늘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회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래서 그 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형식적으로는 17대 국회 또 참여정부에서 법안 발의가 되고 심의가 됐던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시에 오히려 인수위의 요청사항을 17대 국회의원들이 심의했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 앞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애초에 가족 업무나 보육 업무가 여성부에 있다 복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게 2004년부터 여성부에 있다가 그다음에 새 정부 들어오면서 복지부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2004년에 여성부로 갔다가 2005년에 가족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됐다 지금 현재 다시 논의가 의원입법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여성부의 존치 여부 문제하고도 관련됐었습니다마는 자꾸 부처 이기주의적으로 나뉘다 붙였다 이런 것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더 심각한, 아까 홍재형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 수렴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의견 수렴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이 법에 대해서? 물론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갖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이은재 의원님이 제출한 내용하고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정부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실무적 검토가 죽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꼭 이것뿐만 아니고 오늘 법 개정사안은 이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법인화에 대한 노력도 많이 했고요,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것도 했고 그다음에 일부 기관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든지 하는 것을, 법개정이 없는 사안은 죽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여성부의 기능 중에서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기고 결손가족이라든지 하는 문제에서 청소년 문제가 빈발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부에서도 죽 검토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아무튼 잘 알겠는데요. 어떤든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는 정부가 책임지고 고민하셔서 내놓으셔야지 또 이렇게 여성가족청소년부로 했다가 또 얼마 있으면 또 하나를 떼 주거나 붙이거나 이러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좀 늦더라도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으니까 책임 있게 정부에서 다시 입법 제출하는 것이 맞다는 김유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委員長 趙鎭衡** 다음, 정갑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鄭甲潤 委員** 정갑윤 위원입니다.

지난 17대 후반기에 제가 행자위 간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서로 간에 오해의 불씨, 그것은 제가 내용을 가장 많이 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여야 간에 서로 간에 언짢은 부분이 있었으면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오늘 상정된 법안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말씀하시는 그런 회의가 되어야지 서로 간에 이것을 가지고 여야 간에 다툼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명확히 이명박 당선자 시절에 인수

위에서…… 그때 인수위 사무실 앞에 가 보면 시민단체들이 매일 데모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위 요즘 말하자면 야당, 요즘 야당과 여성단체가 강력히 주장을 했고 또 이명박 정부는 대부처주의 해 가지고 통일부하고 여성부를 없애는 게 가장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게 결국 여성단체나 야당이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여성부가 그대로 존재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법안을, 사실은 방금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불과 1년 몇 개월 됐습니다. 1년 몇 개월 됐으면…… 지금 현재 장관님 답변을 가만히 들어보면 밑에 ‘실무 차원에서 의견이 많이 오고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이러한 것은 국무회의에 보고가 돼 가지고 안 되면 차관회의에서라든가 장관의 확실한 소신이 있어야, 홍재형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해 보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을 거둘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명확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실무 차원에서 많은 의견이 오고갔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더더구나 지금 현재 답변 중에 보면 마치 정부가 이은재 의원을 중용해서, 이은재 의원을 통해서 법안이 발의된 것처럼 그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명확히 그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 하는 얘기를 확실히 해 줄 때 이 회의가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그간에 그 많은 야당과 여성단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했던 이 조직이 지금 오늘에 와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충분한 사과는 못 하더라도 해명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간사를 하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정부조직법을.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다음,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여성부가 몇 년도에 생겼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01년도로……

○**이인기 위원** 그렇지요? 여성부의 업무범위에 대해서 한 9년 동안 다섯 번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안위원회에 있어 보면 있을 때마다 여

성부하고 보건복지부 업무분장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에 다섯 번 논쟁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부처가 안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정성? 1년 6개월 만에 갔다가 또 옳기고 옳기고, 공무원들도 직업의 안정성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가족이라는 개념이 왜 꼭 여성부에 가야 됩니까? 가족은 남자 50%, 여자 50%잖아요. 20년 30년 전에는 어머니가 가정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번 통계 내보면, 부부 간에 이혼해 가지고 아이를 누가 키우는지 그것도 한번 내보시고, 엄마가 아이를 100% 키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할머니가 키우는 가정도 많고…… 그래서 가족의 개념에 ‘가족은 여성이다’ 이 자체도 잘못되었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노인이 있는데 아동과 노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중간에 있는 청소년은 여성부에서 맡고 이것도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개편은 첫째 행정의 안정성에 위반된다, 그리고 무슨 단체에서 주장하고 여론만 하면 그 때마다 그 때마다 이 중요한 국가의 중추적인 행정 기능을, 중심 기능을, 중앙부처의 기능을 이렇게 왔다갔다 옮기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지금 보육 기능도 왔다갔다했지요? 보육하는 그분들 업무 말씀 들어보면 정신이 없대요. 자기도 자기 업무가 보건복지부인지 여성부인지 혼동된다, 이것 좀 안정적으로 해 달라, 그리고 뭐가 영속성이 있어야지 우리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업무에 전문가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추측컨대 아동·청소년과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금 좌불안석 아니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청소년이 왜 여성부이어야 되는지, 가족을 왜 여성부만이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밑에 검토의견 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지난 8월부터 여성부와 가족부 간 기능 조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논쟁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다음 이은재 의원……

발의자가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으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잖아요. 상정해 냈는데 어디 가서, 제안설명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나가잖아요.

○**李恩宰 議員** 굉장히 죄송합니다.

○**委員長 趙鎭衡** 제안설명 좀 해 보세요.

○**李恩宰 議員** 우선 본 의원이 이걸 보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여성부를 봤더니 보건복지부에 복지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신종플루처럼 새로운 디지즈(disease)가 굉장히 많아서 보건복지의 업무는 사실은 그와 같은 데 역점을 두고, 이런 가족이나 청소년 그다음에 가족의 해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혼 문제라든지 또는 미혼모의 증가, 그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문제 또 다문화 이주여성들의 불만 이런 것을 도저히 보건복지부에서 다 소상하게 케어할 수 없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이것을 보건복지부의 업무에서 여성부의 업무로 이관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사실은 지난번에 있던 여성부장관과 그다음에 현재 있는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한번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법안은 본 의원이 연구를 해서 내렸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정부부처하고 같이 협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과연 그러면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떨어뜨려 놓으면 문제가 뭐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저출산 문제를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출산과 관련된 것은 아직도 보건복지부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 논리는 또한 예를 들면 유치원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의 업무는 결국 기능에 따라서, 부처의 기능에 따라서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우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에 대한 것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가족의 의미가 이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싱글로 하는 싱글 맘인 가족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는 여성부에서 여성 문제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가족의 해체 문제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족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따지는, 그런 새로운 가족의 가치를 우리가 여성부에서 논의를 해

야 된다, 여성부에서 그 업무를 가져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의 범주는 이 법을 보면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가 청소년의 범주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 할 수 있는, 가족과 관련된 그런 아동·청소년 업무는 여성부에서 하는 것이 마땅히 타당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본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최규식 위원 말씀하시지요.

○**최규식 위원** 우선 사실 관계부터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뒤늦게 아마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지만 그건 발언권을 얻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어서 속기록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7대 말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법안이 나와서 노무현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틀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재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통령직 인수위가 1월 초에 업무를 시작해서 2주일 만에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서 한나라당 전원의 발의로 당시 안상수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법안입니다. 그 법안에 의하면, 여성부·통일부·해양부를 폐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존치가 돼야 하는 것을, 아니, 전 정부 때 전 정부의 국정지표에 맞게 만든 부를 오히려 전부 없애는, 그야말로 전 정부 때 한 것은 없애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 여성부 해양부 이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논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 국회에서만 논의된 게 아니라 전 정부와 당시 새로 집권하는 정부 간에 막후의 얘기까지 서로 오고 가서 결국은 여성부와 통일부가 존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성부 존치 과정에서도 기왕이면 존치하면 업무를 하던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맞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복지부가, 명목상으로만 살려준다고 해 놓고 전부 가져갔던 겁니다. 상황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

고.

그다음에 이 대체토론이 무슨 야당 측에서 책임 추궁을 하고 일부 여당 위원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책임론과 회피론처럼 이렇게 공방이 벌어지게 된 것을 저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 위원들께서 책임을 얘기한 것은 정부가 좀 떳떳하게, 당시에 여성부 폐지를 주장하다가 또 존치가 되게 되었지만 업무를 너무 축소했던 것은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거다 그렇게 좀 인정을 하고 정부 이름으로 개정안을 냈으면 이렇게까지 흘러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떳떳하지 못 하게 나왔기 때문에 정부 답변을 ‘이것 어떻게 된 거냐’ 하다 보니까 책임 추궁을 한 것처럼 되었지, 이게 책임 추궁을 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홍재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더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 내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이은재 의원께서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대체토론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대체토론에서 충분히 나왔던 문제점 이런 부분을 법안심사 소위 할 적에 정부에서 또 행안부 입장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입장까지 필요하면 그날 보건복지부 실무국장이나 누구를 같이 대동해서, 참여해서라도 법안심사 할 적에 매끄럽게 다 나갈 수 있게 그리고 또는 사전에 문제제기를 하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으면 설명을 해서라도 좀 이해가 쉽게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혹여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죄송한 얘기를 드릴 게 있으면 죄송한 얘기를 드려서라도 이해·설득을 좀 잘 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4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4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 · 이미경 · 김부겸 · 양승조 · 전혜숙 · 최재성 · 백원우 · 송영길 · 김성곤 · 조영택 · 강성종 의원 발의)

4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 · 이인기 · 김정훈 · 최구식 · 현경병 · 안홍준 · 배은희 · 손범규 · 나성린 · 정진섭 의원 발의)

4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4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조영택 · 최영희 · 김동철 · 김희철 · 송영선 · 이한성 · 이성남 · 강석호 · 양정례 · 안상수 · 박종희 · 유성엽 · 강성종 · 이진삼 · 박선숙 · 박대해 · 이윤석 · 박상돈 · 최인기 · 박주선 · 김재윤 의원 발의)

4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종근 의원 대표발의)(박종근 · 이한성 · 홍사덕 · 임영호 · 유승민 · 배영식 · 유기준 · 오제세 · 서상기 · 조경태 · 주성영 · 한선교 · 손범규 · 이해봉 · 김재윤 · 안경률 · 김성식 · 박대해 · 이명규 · 정희수 · 강길부 · 조원진 · 김무성 · 이성현 · 고승덕 · 김소남 · 홍재형 · 정갑윤 · 이진복 의원 발의)

49. 이장·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박상돈 · 임영호 · 김성수 · 고승덕 · 김낙성 · 김용구 · 김창수 · 변웅진 · 류근찬 · 이상민 · 권선택 · 심대평 · 강석호 · 김재윤 · 이윤석 · 이회창 · 박선영 · 이재선 의원 발의)

5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황진하 · 김영우 · 김성수 · 권경석 · 박기춘 · 박준선 · 손범규 · 이한성 · 이명수 · 조진래 의원 발의)

5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황진하 · 김성희 · 강성종 · 차명진 · 유정복 · 이해봉 · 이한성 · 심대평 · 정병국 · 김태원 · 문희상 · 김성수 · 문학진 · 권경석 의원 발의)

52. 군사시설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법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이철우 · 배영식 · 김성조 · 이달곤 · 이인기 · 현기환 · 김중률 ·

김성수 · 강석호 · 이명수 · 조문환 · 정해걸 · 황진하 · 신상진 · 박상돈 · 김태환 · 윤두환 · 김광림 · 이해봉 의원 발의)

(12시19분)

○**委員長 趙鎭衡**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52항까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1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의원안은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종업원과 함께 법인 또는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감안해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관리·감독하고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박은수 의원안은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공공기관이 거부할 수 없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동법에 우선 적용됨을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개정안은 이미 우리 위원회의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3건의 개인정보보호법안 안에 모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있어 함께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명수 의원안은 이미 3건의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이며, 박은수 의원안은 이미 회부되어 있는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사한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부가 제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안 제19조에 대해서 정부안은 현행법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양여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고, 김기현 의원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

정하고 있는 양여기준을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유지나 다른 자치단체의 공유지에 공공용재산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기관 등에 양여할 수 있도록 현행 양여기준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김기현 의원안에 따라 양여기준이 확대될 경우 지역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국유지 교환 또는 매각을 통한 부지 확보보다는 시설 설치 후 국유재산으로 이양되는 사례가 증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공유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 없이 양여 허용사유를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소지도 일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 조영택 의원, 박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택 의원안 등 3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설립인가요건 신설 및 인가 취소사유 강화를 통해서 새마을금고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무상태가 건전한 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새마을금고로 육성·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안과 박종근 의원안은 금고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금고와 연합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의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의 직무정지제도를 신설하며 연합회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정부안에 새마을금고 법정적립금 적립률 상향 조정규정이 있으며, 박종근 의원안에 상근임원 기준 강화 및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연임 제한규정 폐지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이 중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연임 제한규정은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현재대로 연임 제한을 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장·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통장은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자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행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서 이장·통장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점에서 활동지원금·처우개선비 지급 등을 통

해서 이장·통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장·통장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주민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명수 의원안은 업무추진비와 상여금·자녀양육지원비·건강보험료 지급 등의 이장·통장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이장·통장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이끌어내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자체의 부담과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으로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시도 이장·통장연합회의 대표 2명씩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 이장·통장연합회가 법에 의해 규정되면 본연의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처우개선 요구 등에 치중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황진하 의원이 대표발의 한 2건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의안은, 현재 동 특별법에 따라서 학교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것에 추가해서 2년제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문대학의 4년제 일반 대학으로의 전환 허용 여부는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인 일반 대학의 신설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수도권 정책과 동 지역이 그동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감내해 온 특수지역이라는 점을 비교 검토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두 번째 발의안은, 현행 특별법에서는 대학 이전 증설, 공장 신설 등의 특례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범위에 반환공여구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법 적용상의 혼란이 있으므로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반환공여구역 제도에도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군사시설 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군사시설이 많거나 군사 작전 등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역 발전이 저

해되고 생활 환경이 낙후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 중 접경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 및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내용입니다.

동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입법 목적이 비슷한 접경지원법에 따라서 사업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군사시설 인근 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 제정안과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법안의 제정 목적이나 개발 지역의 정의라든지 개발지원사업 등에서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의 심사과정에서 이 법안이 국방위원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 의견도 함께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趙鎭衡**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오찬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2시에 시작을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부터 시작해도 한 4시까지 오늘 다 마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委員長 趙鎭衡**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성 위원** 제가 일단 먼저……

○**委員長 趙鎭衡** 정수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수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장·통장이 현재 공무원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공무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수성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질문드리느냐 하면 선거에 이장·통장들이 개입을 많이 해 가

지고 말썽을 부리는 이장·통장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명수 의원이 제의한 이장통장연합회 설립 이 문제는 앞으로 정치성을 굉장히 떨 확률이 있어요. 지금도 이장·통장들이 수당을 줌 받는데 그 받는 것을 가지고 서로 통장을 하겠다고 그리고 이장을 하겠다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장·통장을 굉장히 통제하고 이장·통장들이 또 지방자치단체장들 눈치를 굉장히 봐요.

그래서 앞으로 선거와 관련해서 중립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장통장연합회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 두 번째 공무원이 아니면 선거 중립에 대한 의무가 장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공무원 외에도 일정한 공사·공단 단체 기관장이라든지 주민투표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운동을 못 하는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조금 확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법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수성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에게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군사시설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법안은 국방위원회에서 온다면 이것은 병합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국방위원회도 저희 법하고 유사한 법안입니다.

○**정수성 위원** 그러니까요.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명칭이 좀 다르고 해서……

○**정수성 위원** 그러면 양쪽을 합쳐서 우리는 국방위원회 의견을 한번 참조해 볼 수 있고, 그쪽은 우리 의견을 또 참조해 볼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나중에 조정되어야 됩니다.

○**정수성 위원** 조정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통상 저희들은 지금 위원회에서 올라가서 법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군사시설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법안은 국방부의 군사보호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군사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국방위원회의 의견도 상당히 참조해서 같이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수성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또 김충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충조 위원 짚막하게 한마디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실이랄지 지방청사 너무 과대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뭔가 제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장관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조 위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이 정하는 기준은 일차적으로 공무원 수가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않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김충조 위원 그런데 공무원 수 말고 달리 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공무원 수가 가장 대표성이 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실제로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을 꼭 행정업무시설로만 하지 않고 여기 예 각종 주민 복지문화시설을 붙임으로써 공유면적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 설계면적을 해 가지고 표준 조례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된 성남시청 같은 것은 준공이 이 조례안이 되기 전에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용인시청에서 수지구청을 지금 상당히 큰 규모로 짓겠다는 것이 와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충조 위원 공무원 수만을 획일적으로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랄지 또 기타 행정 형태 또 수요·공급 차원에서의 균형성, 뭐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고, 너무 지나치게 이 문제를 경색하게 말이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보면 또 일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침해한다 이런 비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일정 한계를 딱 정하되 또 그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감사합니다.

○김충조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다음은 김태원 위원 말씀하시지요.

○김태원 위원 김태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통장에 대한 처우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월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학비 보조금……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 외에 학비 보조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일부 있고, 이·통장의 지금 현재 임기가 대략 끝나서 교체할 때 지금 지원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일부 지역은 과열되고요, 농산어촌지역은 자연부락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장 수는 그대로 있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쪽은 상당히 그 부분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이것이 행정의 최 말단에서 주민들하고 점점하는 과정에서 자꾸 필요하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감하게 정치적으로 동원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이번에 자율 통폐합 과정에서는 이분들이 뭉쳐 가지고 고향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몇 분들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단체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인구 변화 추세를 보면 상당히 줄어들 지역에도 이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아져 가지고 좀 어려움을,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는 이·통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영향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것이 너무 사기 진작 차원만 고려해 가지고서는 상당히 주민 간에 또 갈등 요인도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적정 수준의 그러한 사기 진작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정희수 의원께서 발의한 군사시설인근지역 개발이 부분은 국방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접경지역지원법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김태원 위원 그러니까 접경지역은 지금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각종 개발행위가 엄청 주민들이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기간시설 설치라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공공시설을 낸다든지 하는 국가에서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위원님, 중간보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시사항으로 국방부가 지금 만들고 있는 안을 보면 군사기지 주변에서부터 500m를 관리해야 되고……

○김태원 위원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의 의견은 국가에서 기간시설을 설치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김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이·통장이 행정의 말단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말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행정의 말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보조……

○委員長 趙鎭衡 주민 보조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委員長 趙鎭衡 그냥 주민의……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자연부락 주민의 대표적인 성격을……

○委員長 趙鎭衡 주민의 대표 이렇게 봐야지, 행정 보조라고도 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실제로는 한 330만 원 정도 평균적인 지원이 됩니다, 연.

○委員長 趙鎭衡 1년에 330만 원 정도?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委員長 趙鎭衡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다 포함해서입니까, 아니면 현금으로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직간접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委員長 趙鎭衡 다음은 권경석 위원님!

○권경석 위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가 지금 연임 제한이 되어 있지요? 한 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지금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것이 언제부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 연도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은 1회에 한해 연임하고 있는데 연도가 안 나온 것을 보니까 아마 처음부터 그랬지 않나 싶은데요.

○권경석 위원 4년 임기인데 아직 임기 만료가 안 됐지요, 1차 연임된 사람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렇지요.

○권경석 위원 그 아는 사람 없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내년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권경석 위원 연임이 제한된 규정이 새로 개정되어서 시행된 지가 3년 정도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담당 국장이나 과장 아는 사람 없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정확한 기록은 곧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지금 유사 금융기구라면 농협, 수협, 신협, 이런 단체가 있는데 농협은 지금 2회 연임 제한이 되어 있고, 나머지 수협, 신협 등은 1회로 단임밖에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새마을금고는 처음 설립 과정을 보면 농협이나 수협하고 신협하고 좀 다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순수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개인이 자발적인 투자를 한 경우가 많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설립 이사장이 보면…… 그래서 자금의 조성 경위가 전체 회원으로부터 투자를 받았거나 후원금을 받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은 형태가 아니고 지역별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개인 차원의 투자에 의해서 설립이 된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사적인 성격이 아주

많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농협이나 수협과 같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연임 제한을 폐지해 버리면 이것 또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차별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지 실정을 좀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이것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안 하신 모양인데……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지금 너무 사금고라는 인식이 강해져 있어 가지고요 사고가 생기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규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빈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권경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번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세요. 뭐냐 하면 지금 신탁이나 신보 이런 데하고 새마을금고하고 경영 실태가 어떤지, 한두 군데 비리·부정 일어나는 데는 그거야 특별한 사례이고 전반적으로 새마을금고 운용의 실태가 어떤지 한번, 매년 감사하니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분석을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사고 난 것을 보면 비율로 보면 다른 것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나고, 사고가 날 때는 이것이 통장으로 만들어 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중간에서 사고를 내는 수도 있고 해 가지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은 상당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경석 위원 사고 방지 수단은 제도적으로 강구를 하면 되겠지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러려면 규제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년 전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를 한번 수집해 보니까 신탁이나 신탁 이런 데는 공적자금을 다 지원을 받았어요. 몇조 지원을 받았습시다. 새마을금고는 10월 한 푼 받은 적이 없어요. 자력으로 건전하게 경영해 온 결과적인 평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동일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의 설립 경위를 보면 자발적인 사인의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는 차별화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감안

한 이사장의 연임 제한 이것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이 한번 해 버리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2회 연임 제한이나 3회 연임 제한 이것을 심도 깊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분석해 가지고 나중에 법안소위 할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委員長 趙鎭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여기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한미군 지역 그것이 이전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누구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이상 11건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관님, 아마 새로 신임된 간부 소개를 하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委員長 趙鎭衡 소개할 시간을 못 드렸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이 오신 다음에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저희들이 최근에……

○委員長 趙鎭衡 현재 있나 모르겠네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지금 기초실장 한 사람 나와 있습니다, 조직실장 하던.

○委員長 趙鎭衡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번에 부임한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委員長 趙鎭衡 그리고 먼저 기초실장은 차관보로 갔는데 오늘 자리에 없고, 그다음 조직실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조직실장은 울산 부시장 하던 서필언 실장이 됐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아까는 있는 것 같았는데……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회의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그러면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그러면 행안부는 나가셔도 될 것 같고 소방방재청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장내 정리)

- 홍재형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려고 하는데요.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홍재형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지요.
- 홍재형 위원** 행안부장관님, 이장·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이 왔는데 법안소위 할 때요, 지금 전국의 이장·통장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 홍재형 위원** 거기에다가 주려면 무엇을 더 줄 수 있는 것인지 보시고, 또 이장·통장연합회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런 내용의 법안이지요.
- 홍재형 위원** 물론 소위에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수석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자료를 좀 미리 주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저희들이 현황하고 통계하고 지금 지원되는 것하고……
- 홍재형 위원** 법안소위 하기 전에……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곧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강석호·황우여·이인기·이화수·손범규·이해봉·김세연·김소남·현기환·조운선 의원 발의)

5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주성영·김성조·성운환·유승민·박종근·이한성·이해봉·정두언·나경원·이성현·강석호 의원 발의)

5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7.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임두성·김무성·서청원·김소남·진영·최옥철·이인기·김성수·강성천·손숙미 의원 발의)

(14시36분)

○**委員長 趙鎭衡** 이어서 의사일정 제53항~제57항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계속해서 요약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또 정부가 제출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안은 소방방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대해서 직접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근 지방 소방공무원의 근무태만과 부조리로 인한 징계 건수가 급증하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소방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방재청장이 이들의 복무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동 개정안은 전체 소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재난현장 지휘체계 명확화나 대국민 소방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정부 제출안은 대통령이 시도에 두는 국가 소방공무원인 소방본부장을 임용할 때 종전에는 소방방재청장의 제청을 받던 것을 해당 시도 지사의 제청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 소방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를 소방본부장의 인사에 참여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 지방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인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은 소방사무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을 약화시켜 지휘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주성영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안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소방시설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유사 공사들과의 형평을 기하고 하도급 폐해를 없앴으로써 저가 수주나 소방시설 공사의 부

실시공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시설공사의 수행 여건을 향상시켜 소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 방식은 경제성·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소방공사의 저가 하도급과 부실시공 문제는 철저한 감독·관리와 제도개선의 문제이지 분리 발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정부 제출안은 소방시설업 등록 때에 장비 요건을 폐지하고 소방시설업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시 수수료를 면제하며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체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에 관한 업무와 소방기술 자격·학력·경력 인정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위탁업무의 독점체제를 복수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기 위원**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예.

○**최인기 위원** 검토보고서 어디를 얘기하는지를 좀…… 아무리 봐도 전문위원 설명을 눈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요약 보고서를 가지고……

○**委員長 趙鎭衡** 이런 것이 있어요. 거기 배부된 것 중에 ‘검토보고(요약)’ 그것이 있거든요.

○**최인기 위원** 요약 검토보고서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委員長 趙鎭衡** 지금 22페이지예요.

○**최인기 위원** 검토보고서로 따라가려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委員長 趙鎭衡** 들으셔도 똑같아, 내가 보니까.

○**최인기 위원** 아니, 검토보고서 이것으로 하니까 눈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요약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최인기 위원** 요약 보고서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야?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검토보고서는 개별 법률별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는데 시간 효율상 그 안의 내용을 다시 요약을 해 가지고 1권으로 묶어서 요약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최인기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면 몰라도 처음에 안 본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지금.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오전에 제가 보고드렸던 그 자료 계속입니다.

○**최인기 위원** 보고 있어요, 이제는.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그 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임두성 의원 대표발의안은’부터 시작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두성 의원 대표발의안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개인 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 성능을 평가하고 보강·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내진 보강을 추진하거나 완료한 건축물에 대해서 조세 감면과 재해 관련 보험료율의 차등 적용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내진 보강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 쓰촨성 대지진 당시 민간 건축물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대규모 지진재해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동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趙鎭衡**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 우리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김태원 위원** 지금 장제원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 제출안, 이 두 내용이 좀 상반되는 그러한 법률안인 것 같습니다.

다. 그렇지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 두 내용이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김태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 제출안 부분은 방재청장이 제청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장제원 의원께서 하는 어떠한 지위체계 확립이라든가 공직기강 확립, 이런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것은 저희가 시·도지사한테 인사권의 일부인 제청권을 넘기는 대신 그로 인해서 몇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것이 첫째는 지휘권이 조금 약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시·도시사가 지나치게 한 사람을 오래 데리고 있다든지 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에 들어갑니다.

○김태원 위원 보완 방법은 뭐가 있나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장제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감찰 기능을 조금 이쪽으로 가져오고 그다음에 소방본부장들에 대한 임기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도시사가 제청을 했을 경우에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됩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지방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큰 효과가 있습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김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제출안, 소방시설업 등록 시에 장비 요건을 폐지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법안인 것 같은데요, 맞지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분을 규제를 완화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소방시설업협회가 있습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현재 소방시설업협회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두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구성도 안 하고 지금까지 운영도 안 하면서

그 시설업협회에 여러 가지 권한을 위임을 했을 때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의 그러한 권한을 소방안전협회에다가 위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안전협회보다도 시설업협회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판단으로……

○김태원 위원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사고나 화재나 많이 발생되는데 협회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게 한다 했을 때 그게 더 느슨해지면 느슨해졌지 강화되겠습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 부분은 어떤 안전에 대한 관리보다도 이를테면 기술자를 인정할 때 그 사람이 그동안 업계에서 얼마나 일을 했는가 하는 경력 산정이라든지 경력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에서 하는 것보다 협회에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지 안전에 대한 것은 위임하는 게 없습니다.

○김태원 위원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시공능력 평가·공시 업무 이런 부분을 시설업자협회에 위탁을 하도록 하는 부분은, 하여튼 본 위원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趙鎮衡 다음, 홍재형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홍재형 위원 홍재형입니다.

박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홍재형 위원 주승용 의원 발의안하고 관련되는데요.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는데 내가 조금,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최인기 위원 주승용이 아니고 주성영이네요.

○홍재형 위원 주성영 의원이네요? 그러면 더군다나……

○委員長 趙鎮衡 상임위원회 회의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했든지 어느 당에서 했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좀더 좋은 법안이 될 수 있도록만 하십시오.

○**홍재형 위원** 소방공사의 하도급 실태를 소방방재청에서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있습니다.

○**홍재형 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자료가 있습니다.

○**홍재형 위원** 결론이 어때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결론은 놀랍게도 공사 적정가격의 70% 이상으로 발주된 공사가 0.2%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홍재형 위원** 그게 무슨 얘기에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즉 50% 미만의 금액으로 대부분의 공사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홍재형 위원** 그러면 분리발주하면……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분리발주하면 그것은 높아질 것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재형 위원** 관리 감독을 잘 했으면 싸게 되면 더 유리한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싸게 되고 품질을 기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지 아주 낮은 가격으로는 그것을 보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재형 위원** 정부에서 경쟁입찰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왜 경쟁입찰 해요? 저기 낙동강처럼 전부 싸고 치라고 그러지?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위원님, 이 부분은 하도급에 어쩔 수 없이……

○**홍재형 위원** 아니, 불이 많이 났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는데 가격이 싸게 낙찰되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소방방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것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작년 9월에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하셨지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한 적 있습니다.

○**홍재형 위원** 그것 어떻게 됐지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보류돼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까?

○**홍재형 위원** 누가 보류시켰어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전반적으로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끝을 못 내고 회기가 넘어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재형 위원** 작년 12월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을 삭제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분리발주 하는 것이 규제가 강화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홍재형 위원** 글썄, 그래서 삭제가 된 것 아니에요?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소방방재청이 이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규제를 더 추가하는 것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홍재형 위원** 모르면 실무자 시켜서 답변을 하시든지……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새로 온 청장한테 자꾸 미루지 말고.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소방방재청이 입법예고를 해서 정부 내에서 ‘그것은 규제를 더 추가하는 거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통과가 안 되니까 편법으로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낸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홍재형 위원** 완전히 꼼수라고…… 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했다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 된다 그렇게 결정이 나니까 정부 이름으로 못 내고 국회의원 통해 가지고 낸 것 아니에요?

그때 자신 있으면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 ‘이것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맞지요. 정부 내에서도 설득을 못 시키고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 통해 가지고 의원입법하려고 하면 정부가 할 태도입니까?

이것은 과장이 답변할 게 아니고 책임이 있는 청장이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 각 부처 협의 안 되는 것 전부 의원입법시킬 거예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분리발주 관련한 논의는 이것 말고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남경필 의원께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결과는 ‘입법정책적 사항이기 때문에 판단을 보류한다’ 그래서 16대 국회가 임기 만료됨으로써 자동폐기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2008년도 9월 달에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가지고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정된 결과 철회 권고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것은 끝이 안 떨어지고 펜딩(pending)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소위에서 충분히 의사 반영하시지요.

○**홍재형 위원** 청장도 제대로 잘 모르고 계신데…… 16대 때 옛날 얘기 하지 말고, MB 정부에서 입법예고했다가 MB 정부 내에서 철회 권고를 해서 철회한 것을 한나라당 의원한테 ‘좀 내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내 가지고 쓸데없는 시간을 또 낭비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것 말고도 할 일이 많은데……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존경하는 홍재형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전번에 한번 국회의원님께서 소방산업계의……

○**홍재형 위원** 박 청장!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홍재형 위원** 국회의원들 시간 뺏지 말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8월 달인가 9월에 입법예고했다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철회했고 한나라당 의원 통해 가지고 다시 낸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또…… 16대 얘기를 왜 지금 하냐고, 필요도 없지.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러면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산업 진흥 차원에서 소방산업계의 아주 굉장히 원하는 바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답변 준비를 잘 해 가지고……

○**홍재형 위원** 자료를 말이지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소방산업계가 얼마큼 발전하고 이렇게 종합해서 했을 경우에…… 국토해양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것?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국토해양부에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건설산업 전체 차원에서 보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건설산업 관련 법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재형 위원** 박 청장이 여기서 주장을 해도 좋지만 같은 정부 내에서 다른 부처가 반대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조정을 해서 정부안으로 내시든지, 정부에서 조정을 못 하고 이렇게 따로 내면……

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이 문제는 지금 아마 청장도 주성영 의원님이 제안한 법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이야기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안에서 합의를 한번 해 가지고 이 법안에 관한 정부 입장을 소위 심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매끄럽게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범래 위원님.

○**이범래 위원** 소방공무원법 정부안, 아까 우리 방재청장님은 이 정부안대로 시·도지사가 임용 제청권을 가지면 사기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지방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올라갑니다.

○**이범래 위원** 그런데 시·도지사가 임용 제청권을 가질 때 소방본부장은 당연히 자기 지역 사람만 할 것 아닙니까? 논리적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제대로 된 유능한 인재 발굴보다는 오히려 연고인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지역을 잘 아는 그 지역 출신 중에서 보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도지사가 인사에 참여한다는 요구도 있고, 하는 내용을 줌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 3교대 인력을 저희가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로 해서 주면서도 시·도지사가 그것을 다 채우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것은 역시 시·도지사가 자기 권한을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교대 인력 확보 같은 데도 도움이 크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범래 위원** 본부장을 임용 제청하는 데 3교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 당의 박근혜 대표께서 발의한 안이 소방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자체 예산으로 하지 말고 국가 예산으로 하자 그런 안이 있습니다, 아직 행안위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委員長 趙鎭衡** 이범래 위원님, 지금은 상정된 것만 가지고 하시지요?

○**이범래 위원** 이 임용 제청권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소방본부장을 국가직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지휘 감독권을 방재청장님이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임용 제청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용 제청권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인사에 참여하는 것을 주는 것이거든요.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범래 위원** 다음에 이것도 정부안인 것 같은데, 소방시설업자협회라는 것을 별도로 설립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현재 그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왜 만드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소방안전협회가 아까 말씀하신 기술자의 경력에 대한 것이라든지 어떤 시설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러니까 공사업체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방안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협회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소방안전협회보다는 시설업협회가 훨씬 더 그것을 잘 할 것 같습니다……

○**이범래 위원** 제 얘기는 지금 소방공사나 소방시설공사, 우리나라 수준에서 규모도 작은데 한국소방공사협회에 이미 다 그 업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굳이 별도로 만들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런데 시설업자협회는 공사업과 설계업과 감리업, 이것이 다 참여하는 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공사협회를 확장하는 개념……

○**이범래 위원** 그러면 소방공사협회는 그런 사람들이 참여 안 하고 일부 사람만 참여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공사협회는 공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계나 감리는……

○**이범래 위원** 공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는데 감리원 자격 관리도 여태까지 그러면 소방공사협회에서 했습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렇습니다.

○**이범래 위원** 공사업자만 하고 있는데 감리원

자격 관리를 여태까지 그러면 공사협회에서 했다고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업협회를 하게 되면 감리원이라든지 또는 설계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제대로 된 협회가 되거든요.

○**이범래 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공사업자가 자기가 감리받을 사람들 자격 관리를 다 했다고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자격 관리……

○**유정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감리를 어떻게 같이 해요?

○**이범래 위원** 그 얘기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감리하고 이런 사람들 것을 다시 별도의 협회를 또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방공사협회에서 그 부분을 사실상 하고 있었거든요, 경력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경력 관리가 뭐냐 하면 어느 회사에서 얼마큼 근무를 하고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것인데, 그게 사실은 소방공사협회에서 감리까지 하는 것도 좀 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시설업협회를 만들면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범래 위원** 거꾸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라면 이 소방공사협회가 2000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곧바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2001년이나 2002년에 이런 개정안을 내셨습니까? 이런 시설자협회를 만들겠다 이런 안을 내셨습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이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이범래 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완전히 그냥 방치상태로 놔둔 거네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어쨌든 이번에 개선을 촉구한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다음은 유정현 위원님 질의인데 그다음에 정갑윤 위원 그다음에 김소남 위원 그다음에 김충조 위원 그다음에 최인기 위원님 질의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경석 위원.

유정현 위원 질의하세요.

○**유정현 위원** 청장께서, 지금 소방공무원법 정부에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안부와 사전 협의는 하신 것 같은데 찬성하셨

습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유정현 위원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임명제청권 말씀이지요?

○유정현 위원 예.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찬성하셨습니까.

○유정현 위원 찬성하셨어요? ‘찬성했습니다.’ 이러셔야지 ‘찬성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좀 웃기네요.

지금 소방공무원들 충원율이 굉장히 낮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지금 충원율은 계획대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정현 위원 지금 정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지요, 어떻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아니, 3교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유정현 위원 아니요, 원래 정원 대비 적냐, 많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저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원래 정원요?

○유정현 위원 예.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원래 정원 대비는 거의 정원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유정현 위원 60몇 %, 70몇 % 이렇게 되는 것은……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것은 3교대를 할 경우 늘어나는 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필요인력 대비는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필요인력 대비는 부족한데 정원 대비는……

○유정현 위원 필요인력 자체가 부족한데,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도 지자체에서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렇습니다.

○유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시도지사한테 임명권을 준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못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임명한 사람이 지역본부장이 되었는데 그 본부장이 와 가지고 시장님한테건 도지사한테 가 가지고 ‘우리 적으니까 계속 늘려주십시오, 늘려주십시오’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절대로.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특별히 변화가 없으리라

고 봐지는데요.

○유정현 위원 특별히 변화가 없는데 왜 이것을 바꾸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것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정현 위원 예.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지금 소방이라는 기능이 기초 기능이냐 광역 기능이냐 국가 기능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광역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다만 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도 단위에서는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로서는 인건비가 내려가는 경우에 이쪽에 다 충원을 해 줘야 되는데 다른 급한 데 충원을 하는 겁니다.

○유정현 위원 진짜 급한 것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래서 이런 제청 기능을 넣어 주면 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이걸 좀 더 키우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유정현 위원 그것은 환상이지요. 그것은 진짜로 이상적인 얘기고 선한 사람들, 천사 같은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얘기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한테 제청권을 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가져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이범래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경찰하고 소방은 바로 저는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사법시험에 경찰관은 40명이 패스를 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없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시도지사를 상대로 지금 시간외근 무수당 돌려 달라고 소송 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소송을 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정현 위원 충북소방본부에서는 지금 냈지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유정현 위원 충북소방본부에서는 냈어요. 그리고 서울·부산 같은 데서는 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본부장 자체가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건 도지사가 임명한 사람이건 했을 때 본부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제대로 안 주고 그러는 소송 걸겠다 이렇게 했을 때, 본부장이 나를 임명한 사람을 소송을 걸겠다 했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청장께서는 소방직공무원이십니까, 아니면 일반직공무원이십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저는 일반직……

○유정현 위원 일반직공무원이지요, 저는 지금 이 정부 제출안은 소방직공무원들이 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국정감사 때도 질의를 하고 그랬지만 경찰공무원은 지금 국가공무원인데 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청장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방직공무원들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크고 작은 토론회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회를 약간은 경시하는 그런 법안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존경하는 유정현 위원님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구분을 하실 때요 소방본부장이 도지사한테 임명 제청권을 준다고 해서 지방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그것은 국가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신분관리를 다 합니다. 다만 임명할 때 그 사람이 지금보다는 좀더 강력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정현 위원 정확히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아닙니다. 두 번째는……

○유정현 위원 나를 임명한 사람한테 정확한 의사전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委員長 趙鎭衡 소방방재청장, 여기서 법안 지금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위원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충분히 존중하겠다고 그리고 준비하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서로가 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대로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같이 논리 전개를 하면 오늘 이것 하나 가지고서 밤 12시까지 해도 못 해요. 앞으로 오늘 회의는 한 시간 정도만 더 해야 마쳐질 텐데 이렇게 하면 오늘 회의 진전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답

변하시는 데는 요령껏 좀 하세요, 요령껏,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요령껏 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지적해 주셔서 소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렇게 좀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현 위원님 말씀 중에 내가 나서서 미안합니다.

○유정현 위원 아니요, 말씀 잘 하였고, 제 의사는 다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법안소위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趙鎭衡 다음 정갑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鄭甲潤 委員 소방 차장 나왔어요? 그다음 지금의 소방직 나와 보세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인사 담당하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방재청소방행정과장 이양형 소방행정과장이양형입니다.

○鄭甲潤 委員 소방직입니까?

○소방방재청소방행정과장 이양형 예, 그렇습니다.

○鄭甲潤 委員 지금 소방방재청의 소방직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뭐예요?

○소방방재청소방행정과장 이양형 소방직들이 제일로 원하는 것은 3교대 인력을 100% 충원하는……

○鄭甲潤 委員 시간이 없어서 제가 먼저 할게요.

소방청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근무하면서 감히 얘기하시기는 곤란할 텐데 소방청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제 이길로 가면 영원히 끝입니다. 전 소방공무원에 물어 보세요, 소방청 만들어 달라는 거지.

일개 소방본부장이 일개 지사에게 요구해 가지고 그게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정부 조직이 싹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방직이 들고 다니면서 로비하고 더더구나 지금 말이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출직입니다. 아까 우리 장관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소방공무원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다가 더더구나 의용소방대 등 합치면 웬만한 선거는 앞으로 선거하기 힘들어요.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정부조직이 싹 바뀌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무엇을 잘 했다고 그 앞에서 계속 대답만,

말대꾸만 하고 그래요?

그다음 아까 소방시설공사법 이것도 보면, 아 니 사실 공사는 저쪽에 국토해양부 쪽입니다. 그 쪽이 엄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파악하기로. 엄연히 반대하고 있고, 또 실제로 수 요 소비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업자만 생각하지 말고요. 모든 공사마다 분리 발주하면 이것 어떻게 소방만 분리 발주를 원합니까? 다 원합니다, 전부 다. 예를 들자면 정보통신, 문화재 수리 등 등 그 자기 기능마다 다 분리해 달라고 그럴 것 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는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고, 또 실제로 아주 세분화해 놓으면 그다음에 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자 보수가 거의 불가능입 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IMF 겪고 이 경제위기 겪어오면서 그 전에 있었던 사람 상당수가 지금 문 닫았습니다, 상당수가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도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업자 되게 생각하 시던데 이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제 의견을 말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다음 김소남 위원 말씀하세요.

○**김소남 위원** 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 췌어 보겠습니다.

저는 소방이 아니고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에서 지진 피해로 사상자가 많이 발 생하는데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이 최근 10년간 69%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내진 설계율은 16.3% 로 매우 저조한데, 아시다시피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물 대부분이 민간 소유 건축물입니 다.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김소남 위원** 만약 큰 지진이라도 발생한다면 엄청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날 것이고, 선 진국에서는 의무적으로 내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김소남 위원** 개정안처럼 내진 보강을 자율적 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 장님 의견은 어떻게습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김소남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다음 김충조 위원 말씀하시지 요.

○**김충조 위원** 감사합니다.

행안부장관님하고 소방방재청장 두 분이 대담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 률안 이게 국회에다가 제출할 때까지의 내부적 절차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느 쪽에서 먼저 이 런 법안을 제출하자라고 제기를 했습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저희 소방방재청에서 입 안을 해서 입법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 협의하고 규제 심사하고 그리고 최종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쳤습니다.

○**김충조 위원**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에서 독립적 으로 이런 생각을, 발상을 해서 이 법안이 제출 되었네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렇습니다.

○**김충조 위원** 출발을 소방방재청에서 했다 이 말이지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렇습니다.

○**김충조 위원** 장관 명의로 된 제안설명을 보면 ‘이 개정법률안이 시도지사의 원활한 지방 소방 업무의 수행과 국가와 지방의 연계성 강화를 위 하여 시도 소방본부장을 해당 시·도지사의 제청 으로 소방방재청장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은 소방방재청장이 제청을 해서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 임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렇습니다.

○**김충조 위원** 그것을 지금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가 제청하도록 하자, 그래서 소방방재청장 경유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에서 두 번째 단계 ‘경유’라고 하는 것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지금 현재 시도 행정부 지사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이 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시·도지사가 제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충조 위원** 잠깐요. 이 경우의 경우를 말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경유, 경유, 이런 내부적 절차 있잖아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김충조 위원** 그런데 이 ‘경유’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내용의 실질이 뭐냐 이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실질은 사전 협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조 위원** 예?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사전 협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조 위원** 사전 협의, 누구와? 임명권자와?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시·도지사과……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제청권자와……

○**김충조 위원** 제청권자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김충조 위원** 누가 먼저 협의를 요청하게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이게 인사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은 중앙에서 다 했는데요, 만일 이렇게 되면 인사 수요의 발생을 시·도지사가 먼저 감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충조 위원** 그런데 이 ‘경유’라고 하는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는 다분히 형식적이고 절차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경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이고 절차적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소방방재청 직원에 대해서도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면 시·도지사도 소방방재청장하고 협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충조 위원** 좋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에서 그런 표현이 되었는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개정안대로 이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지방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또 ‘지방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김충조 위원** 어떤 면에서 지방 소방공무원들을 사기 진작을 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것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충조 위원** 예.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지금 현재 지방 소방공무원들이 인사와 관련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은 승진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으로 직을 바꾸어 가지고, 이를테면 소방방재청에서 근무를 해야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지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도지사한테 이 임용제청권이 가게 되면 시도에서도 고위 공무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깁

니다. 그래서 시도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가 올라가겠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충조 위원** 아니, 도지사가 임명 제청을 하는 경우하고 중앙 소방방재청장이 임명 제청하는 경우하고 지금 얘기하는 그것이 뭐가 차이가 있어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것은 도지사가 도내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김충조 위원** 잠깐,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으니까……

16개 광역시도의 소관 소방업무를 지금은 지방 소방본부장이 각각 그 지역을 총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업무에 관한 한?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렇습니다.

○**김충조 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중앙에서 임명 제청권을 가짐으로써 적재적소에 소방 관련 효율성 있는 인재를 배치함으로써 이것을 총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 전체적으로 통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각계로 분산시키냐 이 말이에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것은 분산이 아니군요……

○**김충조 위원** 또, 되었어요.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여당 야당 없이 이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부분은 그것으로 같음하고요.

여기 또 제안설명에 보면 말이지요 ‘국가와 지방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면 소방 사무에 있어서의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소방방재청장도 설명을 해 보시고 우리 전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아주 상반된 의견이에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약화시킬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지휘권 행사에 관계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보다는, 그런 염려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본부장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감찰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완되면 그것은 문제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조 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 한번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존에 방재청장이 제청하고 할 때에는 오히려 업무에 대해서 더 전문적이고, 전체적으로 인사 운용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지휘 통솔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지방에 내려갔을 때 시도지사가 할 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존보다는 조금 지휘체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김충조 위원** 되었습니다, 저도 전문위원과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보면 휴직이다, 직위해제다, 정직이다, 이런 권한은 그대로 중앙 소방방재청이 가지고 있고 또 임명 제청권만 분리해서 가고, 이것은 어느 측면으로 보더라도 파행적이에요. 파행적이고 온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소방력을 약화시키고 소방의 위상을 표면시키는 이런 발상을 하게 되었는지 이 발상 자체에 대해서 내가 참 의구심을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존경해 마지않는 행안위 위원들께서도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 특히 법안심사소위 위원들께서는 이 점을 크게 참작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의 그동안에 소방공무원들이 쌓아 왔던 자긍심과 긍지를 아주 훼손시키는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불쾌감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다음 최인기 위원님!

○**최인기 위원** 최인기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방재청장이 지금 상당히 답변을 요령부득하게 한다 내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행정자치부장관 지낸 사람으로서 지금 시도지사에게 임명 제청권 주는 목적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청장이 설명을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소방방재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 시도 소방본부장의 임명과 제청권을 시·도지사에게 제청권 추천권을 일부 나누어서 주겠다.

그것은 왜 그러냐? 시·도지사가 자기가 추천한 소방본부장을 데리고 쓰는 것하고 자기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서울에 있는 소방방재청장이 받으라고 그런 사람을 그냥 일방적으로 받는 것하고 업무의 효율이 다르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에게 내각 총괄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왜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 하느냐?

그리고 또 시·도지사에게 추천권을 주게 되면 시도지사도 다음 여기에 올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래 과장을 그냥 올리는 것으로 추천할 것인지, 더 유능한 사람을 고를 것인지? 이렇게 소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짐으로써 소방인력 증원도 예산 주더라도 떼어먹어 버리고 안 하고 이런 데 대해서 시·도지사가 자기 책임하에서 지방 업무로 되어 있는 소방을……

지금은 소방은 국가 업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지방 소방업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서 책임을 갖고 해라 하는 그런 취지라는 설명을 왜 못 하느냐?

박 청장이 설명을 대단히 잘못 하고 있다. 장관도 마찬가지다.

총리에게 국무위원 추천권을 주기 때문에 총리가 통괄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각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시도지사에게 시도 부지사 추천권을 안 주었다고 생각하면 부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만 쳐다보고 있지 지사 보좌를 안 할 것이에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도지사가 추천해서 행자부장관하고 협의해서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지시를 받으면서도 도지사에게 업무적인 최선을 다해서, 또 중앙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지사에게 또 부탁도 하고 행자부의 지시도 절충해서 수행하고, 이런 관점을 행정부지사에서 여러분이 받은 것 아니에요, 이 아이디어를? 그런 것을 당당하게 설명을 하세요, 앞으로 법안소위에서도.

그다음에 소방공사법,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소방산업진흥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소방산업이 너무 영세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 또 육성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작기 때문에, 소규모 자본이고 공사 주지 않고 대기업이 다 먹어 버리고.

지금 소방은 대기업이 일반 건설업 면허 가지고 있고 소방 면허 가지고요 다 가지고 있습니

다. 자기들이 수주해 버려요, 그냥. 수주해 가지고 소방건설업자에게 하청을 줍니다. 이것은 소방 여러분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소방건설업하고 일반건설업 힘에 밀려 가지고 지금 그것을 못 하는 것이예요. 지금 전기공사하고 정보통신, 문화재 관리 공사, 이것 다 분리 발주하고 있잖아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렇습니다.

○최인기 위원 그리고 지금 대한건설협회는 10대 재벌기업의 건설회사를 비롯해서 대규모 중규모 대기업들이 다 갖고 있고 회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간 일반건설협회 매출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120조입니다. 국가 예산은 300조예요, 인건비 다해서.

소방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얼마 하지요? 2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2조 6000억 원입니다.

○최인기 위원 2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협회의 힘을 못 이겨 가지고 소방공사 분리 발주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래서 작년에 소방산업진흥법을 만들었어요. 국가가 체계적으로 좀 키워라. 단체도 만들고 육성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하고.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리 발주하고 또 포함해서 일괄 발주. 그래서 그 장단점을 여러분이 잘 분석해서 위원들께도 제공하고 또 평소에 그런 설명도 여러분이 하는 노력을 해야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여기에 나와 가지고만 이렇게 여러 분들한테 야단맞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대단히 못 마땅하다. 자료 좀 제공하고 장단점이 무엇이고……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 공사를 하면 하자 보수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건설업자에게 그냥 대규모 건설업자들이 주어 버리면 대규모 건설업자가 나중에 하도급을 주어요. 그리고 소방시설에 하자가 발생했다, 하도급 받은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냐? 본 건설업자에게 하자 책임을 물을 것이냐? 하자 책임 그 부분이 불명확하지요. 처음부터 분리 발주하면 말았던 그 사람에게, 하도급 받지 아니하고 원청을 맡아서 한 그 사람에게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외국 사례는 어떤가? 독일 같은 데는 강하게 분리 발주하도록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데는 선택제로 해 놓았거든. 발주자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입법 정책에 관한 문제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소방 주무 국무위원으로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리해서……

그리고 비용 문제도 하도급이 좋으나, 그냥 대기업이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으나? 그것은 각각의 경우가 다르겠지요. 하청을 안 주고 대기업이 곧바로 소방 공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비용 절감하고 좋을 것이예요. 그러나 지금 대기업들이 소방 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소방산업진흥법을 만들면서 저 나름대로 오랫동안 자료 수집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

그러니까 내 요구는 그것이에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입장을 명확하게 가져라, 우선. 정리된 입장을 국무위원으로서, 소방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장단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들께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사전에 하는 그런 노력을 소방방재청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법안 상정하는 데까지도 위원들께 그런 것을 했다는 얘기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나도 지금 여러분한테 들은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작년에 법을 만들면서 공부했던 얘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게을러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기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鎮衡 다음 권경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권경석 위원 법안소위에 심의할 자료를 중심으로 쟁점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요구하는 자료를 나중에 법안소위 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권경석 위원 첫째 쟁점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인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문화재, 전기 공사, 통신 분야, 소방 시설, 이 네 가지를 분리 발주 가능하도록 일단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권경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소방기본법을 바꾸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하세요.

첫째, 전기공사나 통신공사, 문화재 관련 공사는 대개 보면 단종면허를 갖고 있는 업자들이 참여하지요? 전문기술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권경석 위원 또 비슷하게 소방기술공사도 그런 면허들을 다 갖고 있는데 개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분리발주가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소방시설공사에 응찰하고 낙찰된 업자들 중에 양쪽 다 건설면허, 소방시설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3년 정도로 통계를 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가 구체적으로 확실히 구분이 되느냐? 전기나 통신 분야는 확실히 구분이 되잖아요.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건축물하고 비슷하게 같은 양태인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확실히 분리 가능한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차별성은 인정하지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권경석 위원 소방시설공사하고 통신공사, 전기공사하고는 건축물 시설공사의 내용을 딱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명확히 구분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알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에 관련된 두 가지 쟁점입니다. 지금 방재청장이 소방공무원에 대해 잘못된 것이나 비리자료 제출 요구 등등 징계 요구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처벌 요구지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권경석 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정리해서 보내 줘요. 뭐냐 하면 소방 사무는 지방 사무지요? 도 사무지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지방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기 의사로 사무 처리를 결정하고 자기 부담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을 지방 사무라고 그러지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권경석 위원 그러면 소방 사무도 도 사무이기 때문에 도의 책임, 도의 의사결정, 도의 부담으로 추진한다 이 말입니다. 소방 사무도 엄연히 그 부분에 들어가요.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지요? 그런데 국가기관인 소방방재청장이 자료 요구하라, 필요한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문책을 요구하라, 자치사무에 대한 침해라 이 말입니다.

물론 목적이야 분명하지요. 그러나 자치법 체계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지금 주장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 보면 자치사무에 대한 침해예요. 국가기관의 침해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또 이 비슷한 사례가 있느냐? 분명히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는 구분되어 있고, 국가 사무를 처리하면 국가기관이 지방 사무에 관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자료 요구하라, 문책 요구하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자치법 체계에 대한 특별한 예외, 좀더 심하게 말하면 침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당장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야기 할 것이 있으면.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방본부장의 임용 제청에 관해서는 두 가지 면에서 판단해 봐야 될 것입니다. 소방본부장을 임용 제청하려면 자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권경석 위원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권경석 위원 시도 소방본부의 과장이 청장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과장 이하는 지방직이지요, 소방정? 그렇지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권경석 위원 그러면 결국 국가직 내에서 선발해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소방 본청에 있는 소방정이나 소방중감 중에서 뽑을 것 아니에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러면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한정된 자원 중에서 지금도 사전 협의하잖아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권경석 위원 공식적으로 제청 절차를 안 밟다 뿐이지 지금 협의해요. 지사한테 다 물어본다고요, 이 사람 보낼까요, 저 사람 보낼까요. 그런 지금 비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공식화하자는 것 아니에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권경석 위원 지금 시도 본부장으로 인사를 죽 했는데 시도별로 가용한 자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통계 뽑을 수 있지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해 왔느냐 하는 본인의 경험으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시도 부지사는 지금 제청권이, 추천권이 주어졌지만 똑같이 사전 협의해 왔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나온 관례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권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만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한 분만 모셔 와요, 빨리.

잠깐만 앉아 계세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과 조금 전에 대체토론을 마친 의사일정 제30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제52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은 지금 의결정족수가 충족되고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를 좀 정리하시고서 경찰청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鎭衡 청장님, 수고했어요. 그냥 바로

나가세요.

○최인기 위원 오늘 경찰청도 합니까?

○委員長 趙鎭衡 예, 도로교통법이 지금 많아요. 도로교통법 1건이 48개예요.

○최인기 위원 금요일 오후에 위원장님이 이렇게 막 잡아 두고 위원님들이 또 혹사하시면……

○委員長 趙鎭衡 그래서 한 30분 내로 좀 마치도록 하지요.

○최인기 위원 2시에 시작해서 30분 내로 끝낸다고 하시더니……

○委員長 趙鎭衡 한 30분 내로 마칠 수 있게……

김희철 소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좀 매듭을 지어 줬으면 좋았을 것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김성조·정영희·이화수·정병국·김우남·유성엽·이한성·손범규·김성수·윤영·황영철·강석호·김태환·김소남·박대해 의원 발의)

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권선택·김낙성·김성곤·김창수·심대평·이명수·이상민·이정희·주승용 의원 발의)

6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임영호·김성수·고승덕·김낙성·김용구·김창수·류근찬·이상민·권선택·심대평·강석호·김재윤·이운석·이희창·박선영·최인기 의원 발의)

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이한성·임동규·정영희·안상수·정해걸·김세연·성윤환·이화수·이춘식·김영우·원희룡·박대해 의원 발의)

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박순자·이춘식·조경태·원희룡·김을동·김세연·송광호·임해규·손숙미·차명진·이군현·신학용·이종혁 의원 발의)

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정병국·강석호·원희목·박은수·이인기·정해걸·이한성·안홍준·김성태 의원 발의)

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 대표발의)(곽정숙·강기갑·권영길·박은수·양승조·유성엽·유원일·이한성·이정희·홍희덕 의원 발의)
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나성린·정장선·양승조·송민순·이인기·우제창·안상수·김성곤·김효석·서종표·이낙연·이윤석·오제세·홍희덕·김종률·백재현·홍정욱 의원 발의)
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주승용·강기정·김동철·최규성·송민순·양승조·문학진·최철국·박은수 의원 발의)
6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송민순·양승조·김우남·김영진·이시종·안상수·유기준·김성수·강석호·김재윤·김소남·안효대·이인기 의원 발의)
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이애주·조문환·안형환·권택기·안경률·김금래·정태근·이춘식·손숙미·공성진·김성희·원희목·주광덕·이정선 의원 발의)
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김정권·한선교·김태원·정해걸·이상민·김성순·이성현·손숙미·김효재·노철래·임태희 의원 발의)
7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강창일·이윤석·강기정·김영록·송민순·우제창·주승용·이춘식·최철국 의원 발의)
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례 의원 대표발의)(양정례·노철래·송민순·정해걸·임동규·정영희·김을동·서청원·김성곤·윤두환·백재현·박대해·정하균·유정복·홍정욱·김성태·안효대·신상진·강운태 의원 발의)
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강길부·강석호·강성천·고승덕·권영세·권영진·김광립·김성식·김옥이·김태원·나성린·남경필·박보환·박진·성윤환·신성범·원희목·윤석용·이성현·이정선·이한성·이화수·장제원·정미경·정진석·조원진·조전혁·진수희·차명진·홍일표·황영철 의원 발의)
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서청원·김노식·김성수·김을동·김학용·노철래·박종근·박종희·손범규·양정례·정영희·정하균 의원 발의)
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 의원 대표발의)(공성진·현경병·이해봉·원희목·이한성·김충환·강석호·김동성·김성희·진수희 의원 발의)
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정옥임·이한성·이윤석·이춘식·임영호·윤영·안규백·강운태·심대평·이애주·강명순·정미경·이정선·정진석·홍일표·박준선·조전혁·나성린·조해진·신영수·고승덕·조정태 의원 발의)
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신학용·최영희·강석호·오제세·황우여·김재윤·안홍준·이명수·배영식·이해봉 의원 발의)
7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시종·이범관·우윤근·노영민·이윤석·주광덕·홍일표·우제창·김성곤·김재균·강창일·김영진·김영록·최영희·김동철·박상돈·양승조·최철국·이춘식·김성태·정병국·김충환·허태열·강기정·김재윤 의원 발의)
7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신상진·이정선·김효재·김소남·백성운·박보환·박대해·김태환·서상기 의원 발의)
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이정현·이명규·정두연·신성범·김성조·정갑윤·김정권·조진래·유정현·김태원·신지호·김소남 의원 발의)
8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지호 의원 대표발의)(신지호·강성천·강석호·여상규·이범래·박보환·나성린·배은희·안효대·김동성·이은재·이두아·이한성·조전혁·안홍준·임동규·이성현·정옥임·차명진·신상진 의원 발의)
8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허태열·송영선·임두성·이성현·손범규·신성범·이시종·이해봉·한선교·김무성·조원진·김영선·최연희

의원 발의)

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장세환·유성엽·이한성·양정례·구본철·안상수·김소남·이진삼·박대해·박종희·강석호·정하균·황우여·이해봉·이경재·김우남 의원 발의)
8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발의)(송훈석·배영식·박민식·이화수·이계진·최욱철·김우남·정해걸·김낙성·이사철 의원 발의)
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김정권·유성엽·이용섭·이진삼·안상수·이한성·조정식·박보환·김세연·구본철·김효재 의원 발의)
8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유성엽·김성태·김태원·김정권·이정선·이한성·김우남·안홍준·김무성 의원 발의)
8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조진래·유재중·홍장표·박순자·안상수·유승민·안효대·여상규·손범규·김정훈·백성운·정해걸·이성현·강석호·김성태·권택기 의원 발의)
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송영길·김상희·유성엽·조승수·김성곤·김종률·김재윤·박선숙·김동철·백재현·한선교 의원 발의)
8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 의원 대표발의)(유정현·신학용·원희목·조운선·정병국·신영수·한선교·강석호·유성엽·고승덕·신성범·홍정욱·안효대·심재철·노철래·나성린·김성태·이인기·권영진·김성희·조진형·박종근·신지호 의원 발의)
8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성운 의원 대표발의)(백성운·김정권·이춘식·나경원·장광근·이경재·박대해·허천·정희수·안상수 의원 발의)
9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임두성·박종근·이성현·여상규·손범규·이해봉·김무성·김성수·윤영·이경재·손숙미·윤석용 의원 발의)
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김정권·권경석·정두언·이한성·한선교·안경률·김희철·송민준·양

정례·이성현·김재경·김효재 의원 발의)

9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유정복·홍정욱·이정선·이진삼·정하균·김희철·이한성·김성수·강석호·안상수·이성현·김학송·김태원·신학용·홍장표·최영희·최인기·장세환·김춘진·서청원·김선동·이명규·구본철·김정권·손범규·백성운·양정례·정양석·곽정숙·김동성·유성엽·강승규·정태근·신상진 의원 발의)
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운선 의원 대표발의)(조운선·김태원·유기준·강석호·원희룡·이한성·정영희·유승민·이윤석·이성현·정하균·유성엽·이경재·이인기·박선숙·박선영·신상진·박종희 의원 발의)
9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구본철·이한성·홍장표·유기준·유성엽·황영철·김정권·안상수·유정현·김소남·정양석·김충조·현기환·이명수·박종희·나경원·박대해·정하균·이진삼·신학용·이정선·양정례·황우여·송광호·이화수·이해봉·박상돈·정해걸·배은희·이혜훈·허원제·조정식·박보환 의원 발의)
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김성순·김종률·김희철·박대해·박선영·손범규·오제세·유성엽·이명수·주승용 의원 발의)
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양승조·이한성·이상민·유성엽·신상진·황영철·김동성·변재일·김종률·김성수 의원 발의)
9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 의원 대표발의)(박대해·노철래·고승덕·김성조·김을동·홍사덕·김소남·양정례·유승민·이화수·김정훈·임영호·김성수·정영희·신상진·김효재·박준선·김재윤·유재중·남경필·황우여·송영길·조원진·정희수·이한성·이윤성 의원 발의)
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정선·현경병·양승조·배은희·김장수·이애주·유기준·윤상현·안상수·이정현·박기춘·이성현·강성천·신영수·진성호·유성엽·김성곤·정병

국·진영·정미경·심재철·이두아 의원 발의)

- 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임두성·김무성·윤석용·이경재·정해결·윤영·임동규·한선교·이성현·김옥이 의원 발의)
- 1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조경대·이윤석·이성남·김성곤·김재균·강기갑·유원일·이용희·김낙성 의원 발의)
- 1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주성영·유승민·안상수·김성조·권영진·이두아·홍정욱·정의화·김옥이·조문환·이철우·정해결·주호영·홍사덕 의원 발의)
- 1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이한성·이해봉·정갑윤·안효대·안상수·강성천·황우여·임두성·손숙미 의원 발의)
- 1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김영선·정미경·안효대·황영철·손범규·신지호·김성곤·신성범·김정훈·이명수·황우여·송영선·이한성·황진하·박대해·김성태 의원 발의)
- 1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백재현·최인기·김충조·양승조·김영록·김영진·강기정·김우남·강창일·안규백·김진표·박선숙·박주선·정동영 의원 발의)
- 1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김정권·송영선·신학용·신영수·이성현·유성엽·홍일표·정병국·김성태·이명수·임영호·박민식·손범규·신성범·이시종·심대평 의원 발의)
- 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상민·유성엽·이계진·김태원·이한성·박선영·김성태·우윤근·주성영·손범규·홍일표·노철래·박영선·박지원 의원 발의)
- 107.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동철·김희철·김우남·오제세·이진삼·김재윤·우제창·박기춘·강기정·김충조·양승조·전혜숙·안민석 의원 발의)
- 108. **戰鬪警察隊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안민석·김춘진·권영길·정영희·조전혁·권영진·박보환·김용구·임영호·권선택 의원 발의)

- 109. **戰鬪警察隊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안민석·김춘진·권영길·정영희·조전혁·권영진·박보환·김용구·임영호·권선택·이명수 의원 발의)
- 110. **연쇄살인 방지 및 치안력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차명진 의원 대표발의)(차명진·김성수·조전혁·박보환·김태원·이화수·황진하·이은재·김부겸·신지호·박준선·김영우·김동성·고홍길·김성희·이학재·홍장표·임해규·김영선·조정식·신학용·강승규·박종희·김학용·유정현·정미경·박순자·남경필·안상수·정진섭 의원 발의)

(15시44분)

○**委員長 趙鎭衡**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제110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5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8항~제110항 총 5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안은 현재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학과시험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단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문학원에서 학과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학과시험은 현재 전문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능 검정과는 달리 출제내용과 난이도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출제와 관리는 현재와 같이 국가에서 맡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전문학원에서 현행 지필시험 방식에 따라 학과시험을 실시할 경우 문제지배송이나 관리 과정에서 문제지 유출이 우려되는 등 시험 관리상

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현행 지필시험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학과시험 관리 시스템 등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단부 박상돈 의원안입니다.

박상돈 의원안은 5쪽 상단부입니다.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중 운전을 생업의 수단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위법을 무릅쓰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례가 많은 점 등을 감안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운전면허의 결격 기간을 다소 완화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명수 의원안은 정식 운전면허 취득 전에 예비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1년 이상의 운전 경험을 쌓은 사람에 한하여 정식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정식 면허 취득까지 1단계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운전면허제도의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장제원 의원안은 기능교육이 운전자의 충분한 운전 기능 습득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합격요령 위주로 실시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경률 의원안은 보통면허의 경우 기능교육과 함께 기능시험도 폐지하되 도로주행교육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장제원 의원안과 안경률 의원안의 기능교육 폐지와 관련하여 현행 의무교육 시간은 운전능력 습득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합격요령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할 때 기능교육이 필요한 응시자들만 자율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응시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안경률 의원안은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능교육과 함께 기능시험까지 폐지하고 학과시험에 합격한 응시자가 5시간의 장

내주행교육을 받은 후 연습운전면허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후에는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도로주행교육을 받은 후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에 따라 10시간으로 되어 있는 도로주행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시험이 평가 대상으로 하는 굴절 또는 곡선 코스의 전진능력, 십자형 교차로 통과능력 등 가장 기초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기능시험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윤석용 의원안입니다.

윤석용 의원안은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적재중량 4t 이하의 화물차도 운전할 수 있으므로 경제활동상의 불편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윤석용 의원안은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제외한 보통면허와 소형면허는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청각장애인의 운전 가능 범위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할 때 이로 인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급차 등과 같이 관계자와의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해 청력이 필요한 부분과 또한 도로를 운행하는 3t 미만의 지게차는 통상의 작업환경상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주변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운전 허용 여부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6쪽입니다.

곽정숙 의원안입니다.

곽정숙 의원안은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서 정신질환자와 간질병자를 삭제하여 이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간질은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 장애를 일으키는 발작 증상이 되풀이하여 나타나는 병으로서 운전 중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간질병자의 운전면허 취득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송영길 의원안과 김재균 의원안은 운전

면허증 갱신기간의 만료 전에 지방경찰청장이 면허 취득자들에게 이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는 일반 우편으로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검사·갱신기간을 사사전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갱신 미필자가 매년 상당수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9쪽, 박순자 의원안입니다.

박순자 의원안은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 등이나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휴대 및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 제162조제2항제1호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만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1쪽입니다.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운전 중 휴대 및 제시 의무의 대상이 되는 신분증명서에는 운전면허증 외에도 국제운전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임시운전증명서, 범칙금납부통고서 등도 포함되므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가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심재철 의원안입니다.

심재철 의원안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피하여 도주한 사람을 음주운전자와 같은 수준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김정권 의원안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음주운전자로 간주하여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심재철 의원안은 형사상 범죄 용의자가 도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예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도주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김정권 의원안의 입법 취지는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를 음주운전자와 동일하

게 처벌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김정권 의원안입니다.

김정권 의원안은 3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3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김정원 의원안과 관련하여서는 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무면허 운전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우윤근 의원안입니다.

우윤근 의원안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가 음주운전보다 위험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2009년 4월 1일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자 처벌이 강화되기 전에는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정례 의원안입니다.

양정례 의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전 60일 이내에 해당 분야 전문의와 상담을 하도록 하고 상담을 한 전문의는 그 결과를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지방경찰청장 등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습관성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박준선 의원안은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제작·생산하고 있는 국내업체가 없고 동 장치의 장착 효과 등에 대한 국내의 연구 결과도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전 연구조사 등을 거쳐 그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서청원 의원은 운전자가 자동차 등의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며 공성진 의원은 운전 중에 DMB, CD, DVD 등을 통한 영상물의 시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운전자가 운전 중 DMB 등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은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정안들의 취지와 같이 이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정옥임 의원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 하는 때에도 운전자가 차량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통행한 것을 확인한 후에 차를 출발시키도록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할 때에도 운전자가 차량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의사 주장 여부에 따라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로서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죄로 처벌될 수 있어 이는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주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주영 의원안입니다.

이주영 의원은 동승자의 간접흡연을 막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동승자의 간접흡연 방지라는 개정 취지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용 자동차의 경우 사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운전자의 흡연을 법률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2쪽 주승용 의원안입니다.

주승용 의원안은 주간에도 안개, 강우 및 강설 시와 터널 안에서 운행하거나 주·정차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등화를 켜도록 하고 흐린 날씨나 도로 주변 환경으로 인해 100m 전방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등화를 켜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주간 점등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과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를 선별하여 기존보다 강화된 주간 점등 의무를 운전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주간 점등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심재철 의원은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경찰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가 부착한 경광등·사이렌 등 불법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포상금제가 2001년 3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2개월간 운용된 사례가 있으나 사회 불신풍조의 조장, 전문신고꾼의 출현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되어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5쪽 권경석 의원안입니다.

권경석 의원은 소방공무원도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도 소방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주차위반 단속은 경찰공무원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시 및 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임명을 받아 주차위반 단속을 할 수 있는 반면 도 소속인 소방공무원은 도지사의 임명을 받아 주차위반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도 소속 소방공무원도 주차위반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46쪽 신지호 의원안입니다.

신지호 의원안은 도로에서의 폭주 등 국민들의

안전한 도로교통에 위협이 되고 있는 공동위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위험행위를 한 운전자 외에 다른 운전자나 동승자도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한 경우와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동위험행위는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계도와 단속을 통한 근절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공동위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허태열 의원안입니다.

허태열 의원안은 최근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장치를 불법 장착한 차량에 대해 그 처벌 수준을 현행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서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불법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과속을 일삼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현행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신상진 의원안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 방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시 응급처치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함께 실시할 경우 대한응급구조사 등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응급처치교육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최소 2시간 이상의 교육시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과 독일에서는 운전면허 취득 전에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시 3시간의 응급처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송훈석 의원안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렌터카 등 LPG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LPG 차량 안전관리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009년 10월 현재 전체 등록 차량 중 LPG 차량은 13.9%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LPG 차량을 운전하지 않을 많은 운전면허 취득 예정자들이 LPG 차량의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 법률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임동규 의원안입니다.

임동규 의원안은 현행 규정상 지정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 이내 범위에서 운영정지 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정교육실시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정취소만을 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탄력적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성현 의원안입니다.

이성현 의원안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없어 벌점을 부과 받게 될 사람들이 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경찰청장이 벌점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를 알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56쪽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더불어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을 장려하기 위한 벌점감경제도의 도입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벌점 부과 전에 동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8쪽 신성범 의원안입니다.

신성범 의원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어린이공원과 다수의 도로가 인접한 어린이놀이터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주변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점에서 이들 시설을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로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린이공원 등은 그 수가 매우 많고 곳곳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이놀이터는 그 통계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김효석 의원안입니다.

김효석 의원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1항제2호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등이 주정차 금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시를 통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주정차 금지 장소에 해당되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주정차 금지 장소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 외에는 실제적인 내용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유정현 의원안입니다.

유정현 의원안은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시설로 자연공원법 제2조1호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추가하고 국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을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로 추가하려는 것이나 이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주변 교통여건 등이 매우 다양하여 하위법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4쪽 백성운 의원안입니다.

백성운 의원안은 긴급자동차의 통행차로를 지정하고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때에는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그 차로에서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긴급자동차 통행상의 어려움은 도심 정체구간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긴급자동차 통행차로를 지정·운영할 경우 긴급자동차의 적정 통행속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국 각 지역별로 상이한 교통여건 등을 감안할 때 긴급자동차 통행차로제 도입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충분한 시범운영 등을 통하여 그 도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임두성 의원안은 혈액공급차량을 긴급자동차로 추가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혈액공급차량이 혈액 긴급수송을 위하여 부득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을 감안한 것으로 수술 등에 필요한 혈액의 수송 지연은 인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혈액공급차량을 긴급자동차로 추가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7쪽 김정권 의원안입니다.

김정권 의원안은 법인 또는 개인인 영업주·종업원의 업무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상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양벌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는 영업주도 처벌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영업주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여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책임 없는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바가 있고, 국회도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양벌규정 관련 개정법률안 73건을 제278회 정기국회에서 일괄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정복 의원안과 조운선 의원안입니다.

양 개정안은 종전에 운전면허 취득자가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자전거 운전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도 운전면허와 관련된 벌점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벌점 등의 부과대상에서 자전거 운전자를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전 중의 사유로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008년 10월 3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자전거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에는 별점 부과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으므로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김기현 의원안입니다.

김기현 의원안은 운전면허시험장 내 기능시험 도중 응시자들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능시험용 차량의 보험 가입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내에서 기능시험 도중 2006년에 53건, 2007년에 35건, 2008년에는 8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1쪽 중간 부분입니다.

박상돈 의원안과 오제세 의원안입니다.

양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전용차로의 종류, 통행 가능 차량의 범위 등을 도로교통법에 직접 규정하면서 택시가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73쪽 상단 부분입니다.

개정안들과 같이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 가능 차량을 법률로 정할 경우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현실 교통여건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용차로의 설치권자가 도로별·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4쪽 박대해 의원안입니다.

박대해 의원안은 좌측통행이 법률상 명기된 원칙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보도에서의 보행자 우측통행원칙을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보행자의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75쪽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경우 실제적인 내용의 변화 없이 동 조항이 좌측통행원칙 조항으로 오해될 소지를 없애고 기존의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76쪽 이정선 의원안, 임두성 의원안, 김춘진 의원안 3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선 의원안은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휠체어”로 “간질병자”를 “간질환자”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이고, 임두성 의원안은 “간질병”자를 “뇌

전증환자”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김춘진 의원안은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를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중독자”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이정선 의원안에 따른 간질병자의 순화어인 간질환자는 간질환자(肝疾患者)인지 간질환자(癇疾患者)인지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간질환자(癇疾患者)’로 한자를 병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신체장애인용 의자차의 순화어인 휠체어에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용 스쿠터를 포함할 수 없으므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두성 의원안에 따른 간질의 순화어인 뇌전증은 2009년 6월 7일 대한간질학회에서 간질을 대체하는 용어로 발표하여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학용어로 승인하는 과정 중에 있으므로 향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식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에 법령상 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김춘진 의원안에 대해서는 간질병자가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간질병자가 운전면허 결격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마약중독자의 치료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서 마약중독자의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못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주성영 의원안입니다.

주성영 의원안은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업체의 교통 소통과 관계없는 무분별한 견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위반 차량 견인 시에는 운전자 등에 알리고 30분 이 경과한 후에 견인하도록 하며, 견인 즉시 이를 운전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개정안은 일부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업체들의 수익만을 위한 무분별한 견인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교통 흐름 등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견인으로 인한 국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경우 견인 통보 후 30분간은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아도 되므로 이로 인해 상업지구 등과 같은 상습 주차위반지

역의 경우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9쪽 김소남 의원안과 안상수 의원안입니다.

먼저 김소남 의원안은 현재 도로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 또는 공공기관 경내의 통행로 중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는 도로에 준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안상수 의원안은 대형 건물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통행로, 주차장 등 중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의 개념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교통경찰권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의 교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학교나 공공기관의 경내와 같이 해당 기관에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고 특정한 사람 또는 차량만이 통행하는 곳에서는 제한적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곳일지라도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운전자의 처벌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교통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행 실태는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위하여 도로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사적 영역에 교통경찰권이 과도하게 개입할 소지가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등의 경우에 한하여 도로 이외의 곳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김희철 의원안입니다.

김희철 의원안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및 등학교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녹색어머니회 회원을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어머니중앙회의 설립·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민간단체로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그 회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을 경찰청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설립과 운영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에 의해서도 그

지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관한 규정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2쪽 장제원 의원안입니다.

장제원 의원안은 과태료 납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과태료 납부를 유도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려는 것입니다.

하단 부분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납부자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인한 체납으로 가산금·증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평균 1679억여 원에 달하는 교통법규 위반 체납과태료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4쪽 이주영 의원안입니다.

이주영 의원안은 현재 어린이통학버스로 특별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모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정차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표지판을 어린이통학버스에 부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먼저 개정안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모든 자동차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경우 신고대상 어린이통학버스에 5인승 이하 승용차도 포함되는 등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하여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현행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에 따른 차량의 구조 및 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운행 시에는 보호자를 동승시켜야 하는바, 이 경우 대상 자동차 1대당 차량구조 변경에 약 50만 원~200만 원, 인건비·보험료 등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개정안이 신고대상으로 규율하고자 했던 대부분의 영세한 학원이나 보육시설 등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을 포기하거나 탈법 운영을

시도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법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강창일 의원, 이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전의경 계급 법률화와 관련된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투경찰 순경의 계급 구분과 초임계급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현역병의 계급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현역병 자원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전·의경, 의무소방대원 및 경비교도 대원의 계급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체계와 관련하여 전·의경 등의 계급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의경 등도 본래 현역병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현역병과 같이 법률로 이들의 계급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의경 복무기간 계산 법률화 관련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휴직·정직·영창·직위해제 및 복무이탈기간의 복무기간 불산입 등 전·의경 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복무기간 불산입 등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차명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연쇄살인 방지 및 치안력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치안공백지역의 정의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치안공백지역을 경찰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인구 5만 이상의 시·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치안공백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부산 수영구, 인천 동구, 충남 태안군, 충북 청원군, 대전 유성구, 울산 북구 이

상 6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이들 지역의 치안여건을 전국 경찰서 급지별 평균 치안여건과 비교해 보면 대체로 3급지 평균 치안여건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과 1 기초단체 1 경찰서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동 법률안의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청에서는 경찰서 분할·신설의 우선순위로써 치안여건의 과중, 경비·외사 등의 치안수요, 청사부지 확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찰청의 경찰서 설치 우선순위에 따르면 치안공백지역 지정 대상 기초자치단체 관할 9개 경찰서 중 청주 흥덕경찰서와 대전 둔산경찰서가 치안여건이 과중하고 그 밖의 경찰서는 치안여건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동 법률안의 취지와 같이 경찰서가 없는 인구 5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경찰서를 설치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그 설치 여부를 법률로 규정하기 보다는 각 경찰서별 치안여건, 인력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3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趙鎭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위원 먼저 말씀하시지요.

○**강기정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운전면허 간소화 관련해서 정부 국무회의 의결이 있습니까? 그 법은 언제쯤 국회로 다시 넘어오게 됩니까? 17일에 의결했는데, 운전면허 간소화 법안……

○**경찰청장 강희락**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국회로 넘어오지요? 제출됐습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어제 국회로 제출됐다고 합니다.

○**강기정 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미 제출되어 있는 장제원 의원님안하고도 유사해서요.

그 법률안을 보니까 7단계를 3단계로 축소한

법안인데 학과시험만 하면 바로 연습운전면허를 준다고 했는데 위험하지 않겠나 싶어서 어떻습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시지요. 보니까 2년 이상 경력자의 운전보조자를 동승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운전학원에서 하는 차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운전학원차는 옆에 보조브레이크 페달도 있는 상태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 같아요? 의결하셨으면 의견이 있었을 텐데 경찰청 의견은 없었습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저희들은 사실 학과시험만 되면 운전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연습면허를 주었을 경우에……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하는 모양인데 미국하고 우리는 도로 여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좀 어렵다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런데 경찰청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그래서 걱정이 많습시다. 알겠습니까.

다음 하나는 학과시험 관련인데 김성조 의원님 안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신중한 검토를 말씀하셨지요? 김성조 의원님안, 학과시험을 학원에서 하는 것…… 그러시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손충덕** 예.

○**강기정 위원** 신중한 검토인데…… 청장님, 지금 기능시험하고 도로주행시험은 운전면허시험학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운전전문학원에서……

○**강기정 위원** 운전전문학원에서…… 그동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 과정에서 혹시 운전전문학원의 부정이 어느 정도 발견되고 나타났습니까? 혹시 그동안의 통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동안 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장 강희락**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니까 그 통계는 찾아서 다시……

○**강기정 위원**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통계는 있지 싶은데요,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강기정 위원** 부정사례 발견된 것이 있기는 있습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종종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것은 운전

면허학원에 기능시험하고 도로주행시험은 넘겨져 있는데 학과시험까지 줄 때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이 부정사례가 발견되지 않을까 이런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습니다. 문제 유출이라든지 부정행위인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면…… 그래서 PC로 시험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문제은행 형식으로 본청에서 출제를 해 가지고 학원에서 단말기를 통해서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채점도 가능하고……

○**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부정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 나온 것 있으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소위 때 준비해 주시면 보겠습니다.

○**경찰청장 강희락** 알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甲潤 委員** 정갑윤 위원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종 법안들…… 정부도 하고 있지요? 정부안은 아직까지 국회로 오지는 않았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경찰청장 강희락** 어제 넘어왔습니다. 어제 국회로 제출했답니다.

○**鄭甲潤 委員** 아직 여기는 들어와 있지는 않지요?

사실 시장논리에 맞춰가지고 개선해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너무 영리 목적, 이윤을 목적으로 가다 보면…… 운전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지요.

○**鄭甲潤 委員** 안전이 간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사전에 들어봤고 현재 발의된 내용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특정한 쪽의 편을 들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전이 담보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면허증 다 가지고 계시지만 적성검사 한번 하는 것도 그렇고 재교육하는 것, 재교육하면 누가 옵니까? 안 오지요. 단지 벌점 얼마 깎아준다고 하면 그때야 헐레벌떡 와서…… 그것도 심지어……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저

도 현장에서 다 보고 저도 한 일인데 면허증 발급받을 때 강화해 놓지 않으면 자기 평생 운전하는 동안에 관심도 없습니다, 실제로 바쁘다 보면요.

물론 간소화도 좋습니다. 경제적인 효과, 정말 하루 만에 가서 면허증 따온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결국 그 면허증 가지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노립니다. 그것을 어떤 측면에서든 관리 감독해야 될 곳이 경찰입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예.

○鄭甲潤 委員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법개정은 제일 중요한 것이 본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이 보장 되어야 된다, 그 부분만은 경찰도 할 얘기를 하세요.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鄭甲潤 委員 현재까지 제가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모처럼 제대로 과격적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 같던데 반드시 이런…… 아무리 과격적이라고 해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과격은 아무 쓸모 없다, 나중에 정말 억울하게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자꾸 규제완화 쪽에만 신경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鄭甲潤 委員 쓸데없이 오라고 하면 갑니까? 안 가지. 벌점 깎아준다고 해도 잘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다음 김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 지금 필기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예.

○김태원 위원 전국에 몇 개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26개소입니다.

○김태원 위원 26개소 그러니까 1개 광역시도에……

○경찰청장 강희락 1개 내지 2개씩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1개 내지 2개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예.

○김태원 위원 응시자가 굉장한 불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아까 PC로…… 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서 가지고 국민들을 편리하게 해 주되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안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소화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규제 완화하는 것도 좋은데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고 일단은 현재 정부에서 운전면허취득제도를 보완하는 부분은 서민들에게 면허취득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데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러면 다른 각도로 해서 비용을 줄여주는 방법, 현재 제도를 간소화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줄이는 다른 방법이 또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께서 검토를 하셔서 가지고 그것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취지에도 어느 정도 부응하면서 안전에도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강희락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안 되어 가지고…… 대체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종결한 것을 소위로 넘겨야 될 텐데 오늘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대체토론 종결한 상태 속에서 차기 회의 때, 성원이 되었을 때 소위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강기정	권경석	김소남	김유정
김충조	김태원	신지호	안경률
유정현	이명수	이범래	이윤석

이 은 재 이 인 기 장 제 원 정 갑 윤
정 수 성 조 진 형 최 규 식 최 인 기
홍 재 형

○출장 위원(1인)

원 유 철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최 연 호
전 문 위 원 손 충 덕

○정부측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 관 이 달 곤
제 2 차 관 장 병 규
기 획 조 정 실 장 박 찬 우
경 찰 청 장 강 희 락
소 방 방 재 청 장 박 연 수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영호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6 임영호·김용구·류근찬·이명수·이재선·권선택·이진삼·김창수·박상돈·변웅전·김낙성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6 이철우·김성조·이한성·한선교·조문환·유일호·임동규·성윤환·윤영·정옥임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전부개정법률안

(2009. 11. 16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 17일 회부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진형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7 조진형·김태원·박민식·이인기·김용구·이화수·정해결·최연희·안형환·김낙성·이사철·이은재·박희태·원유철·정갑윤·김소남·김재경·신지호·이춘식·이범래·신성범 의원 발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7 유기준·김영진·신학용·유성엽·박대해·정해결·이명수·진영·노철래·김옥이 의원 발의)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7 유기준·김영진·신학용·유성엽·박대해·정해결·이명수·진영·노철래·

김옥이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7 유기준·김영진·신학용·유성엽·박대해·정해결·이명수·진영·노철래·김옥이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7 배은희·이명규·이진복·강성천·김금래·나성린·김세연·조문환·안효대·최철국·권영길·차명진·이한성·권성동·장길부·김성희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18일 회부됨

○보고서 제출

2008년도 행정안전부 자체평가결과보고서

2008년도 경찰청 자체평가결과보고서

2008년도 소방방재청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이상 3건 2009. 11. 19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 20일 회부됨